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당사자의 신원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인 신청인이 한국에 오기 전 조선족 남자에게 몸을 팔면서 노예처럼 살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2서울조정326 · 327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
 피신청인: (주)조선일보
 중재부: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2012. 3. 14.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 · 반론보도 및 30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 북한 탈출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 신청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조선족 남자에게 2만 위안에 몸을 팔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중국 국적의 미혼자와 동거관계에 있었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팔며 노예처럼 살았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강제北送으로 만신창이... 그때 날 도운 건 한국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10면)

내용: 3차례 탈북 시도 끝에 한국 땅 밟은 ○○○씨. 탈북자 ○○○씨는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 얘기가 나오자 눈물부터 글썽였다. 꿈에 그리던 한국땅은 2006년 1월에 밟았다. 최초 탈북 후 9년이 걸렸다. 참으로 질곡의 세월이었다.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두만강을 3번 건넜고, 가까스로 닿은 중국 땅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복송된 것만 2번이었다.

○씨는 ○○○에서 태어났다. 광산에서 마광기(광석을 잘게 부수는 기계)를 운전하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5남매 중 맏이었다. 세 끼는 커녕 허기 달래기가 어려웠던 시절 옆집 일가족 7명이 굶어 죽는 것을 목격했다. 1997년 8월, ○씨는 처음 두만강을 건넜다. ‘일단은 북한만 탈출하자’고 생각했다고 한다.

“나이 스물일곱에 가진 건 몸뚱아리뿐이었습니다. 예뻐 조선족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남자에게 2만 위안(약 356만 원)에 몸을 팔았어요. 낮에도, 밤에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가짜 호구(戶口)증을 가지고 다니며 시장에서 김치를 팔아 연명하던 ○씨는 2002년 11월 처음 중국 공안에 발각됐다. 17㎡(약 5평) 남짓한 변방구류소에 ○씨 같은 탈북자 30여 명이 떨고 있었다. 공안들은 실내에 사냥개를 풀었다. 낮에 개에게 물어뜯기고 나면, 밤엔 공안들이 자고 있는 탈북자들을 깨워 때리기도 했다.

한달 뒤 북한에 송환됐지만, ○씨는 강제노동 6개월 만에 허술한 경비를 틈타 다시 두만강을 넘었다.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는 ○씨를 도운 건 한 한인 자선단체였다. 건강을 회복하며 목숨을 부지했지만, 악몽은 다시 찾아왔다. 2004년 엔벤 길거리에서 중국 공안에 다시 붙잡혔고, 이번엔 고향인 무산군 보위부로 이송됐다.

각목으로 두들겨 맞아 오른쪽 어깨가 부서졌고,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풀려났고, 이틀 만에 다시 두만강을 기어 넘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이를 악물었다. 탈북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라오스·태국을 거쳐서 2006년 1월 ○씨는 한국 땅을 밟았다. ○씨의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았을 때,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씨는 지난 1월 자신을 담당하는 ○○경찰서 최○○(57) 경위의 도움으로 어깨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뼈 속까지 썩아 터진 염증을 긁어냈고, 아직 몇 차례 더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씨는 “행복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직접 돌보지 못했던 4살 된 딸아이도 이제 제 손으로 기를 수 있게 됐다. ○씨는 “북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우리 가족들이 어서 한국에 와서 나처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면 10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강제 북송으로 만신창이… 그때 날 도운건 한국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3차례 탈북 시도 끝에 한국 땅 밟은 ○○

○씨”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8일자 사회 10면에서 3차례에 걸쳐 북한탈출을 시도한 끝에 성공한 ○○○씨의 탈출과정에 대해 보도하면서 ○씨가 나이 스물 일곱에 조선족 30대 남자에게 2만 위안(약 356만 원)에 몸을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씨는 중국 국적을 가진 미혼자와 동거관계에 있었으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몸을 팔며 낮이나 밤이나 노예처럼 살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지는 ○씨가 “고문 후유증으로 직접 돌보지 못했던 4살 된 딸아이도 이제 제 손으로 기를 수 있게 됐다”으며 “우리 가족들이 어서 한국에 와서 나처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씨는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직접 키워왔으며, 가족들이 이미 남한으로 다 넘어온 지가 6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반론보도 및 300만원)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 목 : “탈북동포 ○○○씨”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8일자 “강제북송으로 만신창이… 그때 날 도운건 한국인” 제목의 기사에서, 3차례 탈북시도 끝에 성공한 ○○○씨가 탈북 후 중국에서 조선족 남자에게 2만 위안(약 356만 원)에 몸을

팔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씨는, 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탈북 후, 중국에서 조선족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우리 가족들이 어서 한국에 와서 나처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씨가 고문 후유증으로 한국에서 출산한 딸을 직접 키우지 못했다는 내용은, 딸을 낳은 후 ○씨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키워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2년 4월 11일까지 조선일보 사회 2면에 게재하되, 제1항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3차례 탈북 시도 끝에 한국 땅 밟은 ○○○씨”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11일까지 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인을 고소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아들(공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2서울조정350 · 351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이○○
피신청인: (주)헤럴드미디어
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2012. 3. 22.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30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법정관리인인 신청인이 소액주주들로부터 피소됐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아들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위원의 초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였고,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아들을 언급하며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헤럴드경제: 「이준석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2012년 3월 26일자 19면)

내용: 하이드로젠 법적관리인 소액주주 수백억 포탈 주장

이준석〈사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부친 이○○(54)씨가 지난 9일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하이드로젠 파워(이하 하이드로젠)의 법정관리인 신분인데, 과거 소액주주 40명이 이 씨와 공동 관리인인 이스△ 씨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이다.

소액주주 대표인 최○○씨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관리인은 상장폐지 협박 및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대주주를 내쫓고, 그 과정에서 인수·합병(M&A) 등 조작정보에 의한 주가조작,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수백억원을 포탈하는 등 4000여 명의 무고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굿모닝 신한증권 지점장과 국제영업부장을 거친 금융인 출신이다.

녹색주로 각광받으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육박했던 하이드로젠은 2010년 우회상장 2년 만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100억 원 규모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되면서 투자자들과 이 전 대표 간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져왔다.

이 전 대표는 올 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하이드로젠은 현재 채권자인 삼보산업의 신청에 의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헤럴드경제 경제면에 아래의 정정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이준석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목: “이준석 부친 수백억포탈 소액주주 주장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내용: 본 신문은 지난 3월 16일자 경제면에 “이준석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이라는 제목 하에 소제목으로 “하이드로젠 법정관리인 소액주주 수백억 포탈 주장”이라는 소제목으로

1) 소액주주 대표인 최○○씨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관리인은 상장폐지 협박 및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대주주를 내쫓고, 그 과정에서 인수 합병(M&A) 등 조작정보에 의한 주가조작,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며 수백억원을 포탈하는 등 4000여 명의 무고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최○○씨는 이러

한 제보사실을 부인하였고, 사실 확인 결과 이준석 부친인 이○○씨는 해당 회사가 보전처분이 내려진 2011년 11월 2일자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상기의 구 경영진간의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관련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또한 금번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혀 왔기에 해당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300만원)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이준석 부친 수백억포탈 소액주주 주장 관련 정정보도

나. 내용: 헤럴드경제는 지난 3월 16일 경제면 “이준석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제목의 기사에서 소액주주 대표인 최○○씨의 발언을 인용해 하이드로젠파워의 법정관리인인 이○○씨가 주가조작과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며 수백억원을 포탈하는 등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부친인 이○○씨는 상장폐지 이후인 2010년 11월 3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구 경영진간 법적 분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씨는 보도에서 언급된 고소·고발건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근거 없는 악성비난이나 음해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임을 밝히며, 제보자인 최○○씨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제보한 사실은 없는 것

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17일까지 <헤럴드경제> 13면에 제1항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인 “이준석 부친이 고소·고발당한 까닭은?” 활자와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 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4월 23일까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청와대 파견공무원인 신청인이 행정관임을 사칭하고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354 · 355 · 356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주)아이티엔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12. 3.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100만원, 유감표명)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청와대 파견 소방공무원인 김모씨가 친구들과 함께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청와대 행정관임을 사칭한 적도 없고 종업원을 폭행하지도 않았으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1백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YTN :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청와대 근무 공무원 술값 시비 끝에 연행’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7일 08:09)

내용 :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와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50대 남자 네 명이 술에 취해 앉아 있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은 술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리에 누워 버립니다.

이들은 술값 시비로 술집 점원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 파출소에 왔을때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했습니다.

알고보니 일행 가운데 50살 김 모 씨는 청와대 소방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겨우 파출소로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다 그래요, 청와대 계장이라고 그래서...”

술이 깬 일행은 뒤늦게 술값을 계산했지만, 점원을 때린 혐의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YTN 매 뉴스시간마다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청와대 공무원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여 체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7일 8시 아침뉴스프로그램에서 “청와대에 파견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인 김모씨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씨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체포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씨는 사건당시 일행들이 술이 이미 다 깬 상태여서 보도에서처럼 술에 취해 드러누운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100만원, 유감표명)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 목 : ‘청와대 행정관 사칭 소방공무원’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YTN은 지난 3월 7일 청와대 파견 소방공무원인 김모씨가 친구들과 함께 술값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청와대 행정

관을 사칭하거나 종업원 폭행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4월 10일까지 계좌이체(○○은행 ○○○○○-○○○○-○○○, 예금주: 김○○)를 통해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이 행정관을 사칭한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4.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2년 4월 4일까지 1회(오전 7시 뉴스) 보도하되, 뉴스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본문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관련 기사에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광고지를 동의 없이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대구조정8 손배청구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주)경북일보

중재부 : 대구중재부

접수일 : 2012. 4.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5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농협캐피탈을 사칭한 사기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광고지를 동의 없이 함께 게재했다. 이 보도로 신청인이 정식 농협캐피탈 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기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인터넷 경북일보 :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극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내용 :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극성

문자·팩스·전단지 등으로 농촌 노인·서민 현혹 농협, 브랜드 신뢰도 추락 불구 '강 건너 불구경'

이 모(33·영양읍)씨는 21일 신문, 잡지에 난 NH농협캐피탈 전단지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가 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금리가 맞지 않으면 다른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기관과 연계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이상한 생각이 든 이씨는 가까운 농협에 확인해보니 NH농협 상표를 사칭한 사기대출이었다.

이씨는 “전단지만 보면 누구라도 NH농협캐피탈 전단지로 오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경북 북부 일대 NH농협 상표와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대출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주로 노인과 서민층을 노리고 광고문구가 전송돼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작 이에 적극 대처하고 실상을 알려야 할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만 전이다.

21일 경북 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주로 휴대전화, 팩스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전단지 형태로 일반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 사무실과 가게 등에 전송되는 사기대출 광고가 주로 NH농협 상표와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

문자와 팩스내용은 NH농협캐피탈이라고 소개한

뒤 수신자가 현혹될 만한 대출금리를 제시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특히 의혹을 갖고 전화를 걸거나 걸려온 전화에 응대하면 농협이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캐피탈로 출범했다고 속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대출금리가 맞지 않으면 다른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기관에 연계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마저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광고 여부 확인을 위해 NH농협캐피탈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ARS자동응답기는 신규고객과 기존고객만 응대가능하고 사기성 여부 또한 확인할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이처럼 NH농협을 사칭한 사기대출 광고가 극성을 부리지만 NH농협은 캐피탈은 '팩스나 문자 등을 이용한 대출은 하지않고 NH농협을 사칭한 사기대출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는 말만 되풀이하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대처해 비난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H농협 경북본부 여신담당 권○○ 차장은 “NH농협이나 캐피탈은 070 전화번호로 발송되는 전화문자나 팩스, 전단지영업은 하지 않는다”며 “NH농협은행만이 아닌 농협 로고에 쉽게 현혹돼 아직까지 농협부나 지역농협은 별다른 대책이 없고 중앙회나 캐피탈에서 사기대출 예방안내공지를 강화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농협을 믿고 사는 농촌 어르신이나 서민들에게 피해우려가 있는데도 자기 일이 아니라 식의 책임회피는 1천만 농협고객을 무시한 처사”라며 “보이스피싱처럼 대대적인 안내홍보와 사법기관과 연계한 추적단속으로 단 1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50만원)

<합의내용>

1.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5십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대창 납품업자인 신청인의 창업 상담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2서울조정594·595(병합) 손배청구

신청인: 이○○

피신청인: (주)제이티비씨

중재부: 서울제7중재부

접수일: 2012. 4. 25.

처리결과: 조정성립 (신청인 관련 영상 삭제)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양, 대창 프렌차이즈 업체가 원가 대비 비싼 가격에 대창을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서 양, 대창 납품업자인 신청인의 창업 상담 모습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이며, 음성변조 또한 불완전하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의 항의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1) JTBC :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대창 사르르 녹는 미각'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2일 23:00)

내용 : [대창 납품업자] 대창을 이렇게 까면 기름이 거의 없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지혈증 있으시다면서요. 반으로 잘라본거예요.

[제작진] 자르면 안에 기름이 없어져요?

[대창 납품업자] 기름이 (불에 녹아서) 많이 날아가죠. (중략)

(자막) 대창을 1차 손질해 식당에 납품하는 업체

[제작진] 얼마의 가격에 공급하나요?

[대창 납품업자] 대창은 (1kg)에 2만5천원

[여자성우] 1인분 원가 1600원이었던 대창이 손질을 거치면서 5000원으로 뽀는 것이다.

(중략)

[여자성우] 양의 납품가는 얼마나 될까

[대창 납품업자] 양은 3만8천원이예요. 1kg에.

[여자성우] 납품가는 kg당 13,000원 차이, 하지만 판매가는 비슷하다.

(자막) 대창 1kg 납품가 2만5천원, 양 1kg 납품가 만8천원

[대창 납품업자] (양은) 원육 자체가 1kg에 3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남는거 없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구색을 맞춰야 하니까. 양은 별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중략)

[대창 납품업자] 대창하고 막창이 마진이 좋다는 거죠.

[제작진] 사장님도 대창은 (이윤이) 남으시겠어요.

[대창 납품업자] 그러니까 그렇게 세이브를 하는 거죠. (양으로) 못버는 것도 (대창에서) 세이브 할 수 밖에 없죠.

(2) 인터넷 JTBC :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대창 사르르 녹는 미각' 제하의 보도의 다시보기(VOD) 영상 (2012년 4월 22일자)

내용: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신청인 관련 영상 삭제)

〈합의내용〉

1. 피신청인들은 2012년 5월 10일까지 인터넷 조정 대상방송(http://home.jtbc.co.kr/Vod/VodView.aspx?epis_id=EP10011850) 및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
2.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 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들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허위보도에 해당하더라도 보도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가. 해당 보도의 내용은 ‘쌀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고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해 왔었는데,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외교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측에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어 ‘원고가 쌀시장 개방에 관하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참여정부의 협상지침을 어기고 국무회의에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대한민국 외교부의 고위공무원인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이를 배반하는 행동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은 원고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얼마 후인 2007. 8. 29. 〇〇 의원과 〇〇 대사를 만나 나누는 이야기 전반에 관한 것인데, 약속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위 문건의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쌀 개방의 추가협상을 「약속」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도는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을 인용하면서 “김〇〇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등으로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하여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 〇〇가 이 사건 보도에서 「약속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나 언론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제보나 폭로를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못하게 되면 비록 당사자의 인격권은 보호받게 되지만 언론으로서의 취재 보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받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박탈하여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해당 보도는 한-미 FTA 재협상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되는 의혹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건 : 2011가합116282 손해배상(기) 등

원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피고 : 주식회사 한겨레신문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론종결 : 2012. 5. 2.

판결선고 : 2012.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한겨레신문(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의 광고란을 제외한 1면(종합) 기사 게재부분에 '쌀 개방 추가협상 약속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아래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의 내용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기재하라. 만일 피고 ○○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은 원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이 관계

원고는 1974. 5. 제8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2006. 6.경부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체결을 위한 대한민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역임하고, 2007. 8.경부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이후 공직에서 퇴직하고 2012. 4. 12.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여 서울 강남(○)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 ○○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간지인 '○○'을 발행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의 직원들인데, 피고 정○○는 경제부장, 피고 정○○는 경제부 기자, 피고 박○○은 논설위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다.

나. 한-미 FTA 협상안 타결 및 이후 재협상 등의 경과
1) 한-미 FTA 경과와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작성 경위 및 내용

2006. 2. 3. 미합중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이 선언되어, 그 때부터 2007. 6. 29.경까지의 협상 끝에 2007. 6. 30 한-미 FTA 협상안이 타결되었다. 그 무렵 ○○(○○, 미합중국 노스 다코타주 민주당 하원의원, 이하 '○○ 의원'이라 한다)는 연례 한미의원 외교협의회 공동회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였고, 2007. 8. 29.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이었던 ○○(○○, 2005. 10.부터 2008. 9.까지 근무하였다, 이하 '○○ 대사'라 한다)와 함께 원고

(당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를 면담 하면서, 한-미 FTA 등의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위키리크스(Wikileaks)¹⁾는 2011. 8. 30.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문서번호 07SEOUL2634, 갑 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 이라 한다)을 공개하였는데, 위 문건에 의하면, 이는 ○○ 대사가 2007. 8. 30.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 의원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재하여 비공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

1. (SBU) SUMMARY : On August 29, newly appointed Trade Minister Kim Jong-hoon reviewed major KOR US-FTA trade issues with Congressman Earl Pomeroy (D-ND) and the Ambassador. Congressman …… Pomeroy indicated Congress is likely to defer FTA action for some time. However, he spotlighted U.S. beef, rice, and autos as key concern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foster a more receptive Congressional climate. TM Kim responded that (1) the bone-in beef import protocol would likely be wrapped up in October, thereby permitting the full resumption of U.S. beef imports; (2) rice, although excluded from the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 and (3) the U.S. auto sector’s objections to the ten-year phase-out of the light-truck tariff should be balanced against overall U.S. gains from the agreement, the ROKG’s unprecedented steps to meet U.S. demands on auto tax and standards issues (including the dilution of emissions standards),

and the need for U.S. companies to address their own internal competitiveness issues. ……
END SUMMARY.

5. Widely viewed as deserving “affirmative action”, rice farmers had attracted enough public support to make the issue untouchable at this time. However, Kim indicated that the ROKG(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2) 한-미 FTA 자동차 관련 재협상 등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007. 9. 대한민국 국회(제17대)에 제출되었다가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자, 2010. 10. 8. 제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그런데, 2010. 11. 12. ‘G20 서울 정상회의’²⁾에 참석한 ○○(○○) 미합중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하여 ‘자동차 문제’가 최종 쟁점임을 시사한 다음, 2010. 10. 30.부터 2010. 12. 3.까지 사이에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에서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 2010. 12. 3. 자동차 부문에 관하여 ‘미합중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이후에 한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할 경우 미합중국은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 중 25,000대 이상 판매되는 차량에만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한-미 FTA 재협상안이 타결되었다. 그 후 2011. 10. 21.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하였고, 2011. 11. 22.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어,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3) 쇠고기 관련 협정

1) 정부와 기업, 단체의 불법·비리 등 비윤리적 행위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2006년 12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설립된 고발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와 관련된 인물들 중 신원이 밝혀진 사람은 언론의 자유와 검열 반대를 주장해 온 전문 해커 출신의 설립자 줄리언 아센지(Julian Paul Assange)이다.

2) G20 주요 경제국의 정상들이 2010. 11. 11. 및 같은 달 12. 서울에서 모여 개최한 회의로서 금융 시장, 세계 경제에 관한 것을 주제로 다루었다.

가) 1992. 6. 11.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³⁾에 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1995. 12. 경 ‘관세부과 형식으로 2001년부터 쇠고기수입을 완전 자유화하라’는 미합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였는바, 2003. 12. 27. 미합중국 내에서 우해면상뇌병증[牛海綿樣腦症(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이하 ‘광우병’]이라 한다)이 발생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 후 2006. 9. 8. 미국산 쇠고기에 관하여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고기로 제한’하여 수입이 재개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수차례 ‘뼈’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 2006. 11. 24. 뼈 조각 발견
- 2007. 8. 2. 척추 뼈 발견
- 2007. 10. 5. 등 뼈 발견

나) 2008. 4. 11.⁴⁾에 ‘한-미 쇠고기 협상’이 개시된 결과 2008. 4. 18.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연령 30개월 미만의 소는 편도와 소장 끝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 30개월 이상의 소는 안구, 뇌 등 특정 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SRM)을 제외한 부위(뼈 포함)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4) 쌀시장 관련 협정

가) 농산물 분야는 그 동안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입제한 등 GATT 규율의 예외가 인정되어 왔는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수입제한, 보조금 등의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말한다)을 없애는 대신 국내의 가격차를 ‘관세 상당치’

(Tariff Equivalent, TE)로 전환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 관세 및 관세 상당치 인하, 국내 보조금 및 수출 보조금 감축 등에 합의하게 되었다. 다만 모든 상품에 대해 포괄적인 관세화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국의 시장이 한 번에 개방되면서 입는 산업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관세화의 유예>를 인정하고, 일정한 비율의 <최소시장 접근>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⁵⁾ 회원국들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하면서 쌀 시장에 관해서는 1995년부터 10년 동안의 최소시장접근 물량(MMA)⁶⁾ 명목으로 관세화를 유예받는 대신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이후 2004. 12.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국 등과 쌀 재협상을 재개하여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해 2014년까지 유지할 것을 선택하였다. 다만 의무수입 물량이 종전의 4.4%에서 7.96%로 증가하였고, 밥쌀용으로 시판할 물량은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한 최종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쌀 협상에 참여한 9개국과 협상을 타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

피고 ○○은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을 인용하여 2011. 9. 15. 자 ○○의 1면에 별지 2. 이 사건 보도 중 제1기사(갑 1호증의 1)를, 같은 신문의 8면에 제2기사(갑 1호증의 2)를, 같은 신문의 31면에 제3사설(갑 1호증의 3,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하고, 위 각 기사 또는 사설을 특정할 때는 ‘제1기사’, ‘제2기사’ 또는 ‘제3사설’이라 한다)을 각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푸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각료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8번째인 19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4) 원고와 ○○ 의원의 면담일인 2007. 8. 29.로부터 7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다.

5)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1995. 1. 1. 발효되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서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6) Minimum Market Access :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 중 하나이다.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제한하던 국가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 제1기사

제목: 김○○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본문: ㉠ 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직후 2007년 8월 미국 쪽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1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김○○ 본부장은 2007. 8. 29. 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

● 제2기사

제목: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본문: ㉣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뒤 미국 의회가 비준을 위해 내세운 '선결과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유예, 쌀 추가협상이었다. …… ㉤ 이 가운데 쇠고기와 자동차 재협상은 미국 쪽 요구에 따라 2008년 4월과 지난해 12월에 각각 이뤄졌고, 남은 것은 쌀 추가협상뿐이다. ㉥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 8. 31. 자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을 보면, ○○ 의원은 '한-미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빼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약속했고, 실제로 두 나라는 2008년 4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 ㉦ ○○ 의원은 또 픽업트럭이 미국 쪽 민감품목이라며 관세 25%를 협정 발효 뒤 10년간 균등 철폐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두 나라는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벌였고, 픽업트럭 관세를 7년차까지 유지하도록 변경했다. ㉧ 마지막으로 쌀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한다고 지적하자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

년 이후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을 통해 쌀시장 전면 개방을 2014년까지 유예하였는데, ……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는 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상황이다. ㉩ 게다가 미국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김○○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높다.

● 제3사설

제목: 김○○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본문: ㉣ 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과 쌀 수입 협상을 따로 하겠다'고 미국 하원 의원에게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 문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타결 뒤인 2007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김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까지 종료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는 협정에 쌀은 제외됐다는 정부 설명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 문건으로 보면, 김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권한 남용을 한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 '미국이 쌀 문제를 꺼내면 협상을 깨라'는 게 당시 참여정부의 협상지침이었다. 김 본부장이 이를 어기고 국무회의에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 ㉧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김 본부장이 쌀 수입협상을 시사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자동차 세제와 환경기준의 개정을 거론한 대목도 있다. 모두 국회가 진상조사를 해야 할 사안들이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외교통상부는 피고 ○○○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서울조정○○)에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2011. 10. 14. 정정보도를 명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

는데, 피고 ○○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이 서울 서부지방법원(○○가합○○)으로 넘겨졌다. 위 법원은 2012. 2. 10. 원고인 외교통상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⁷⁾을 선고하였고, 피고 ○○이 이에 불복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23414)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지의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호증, 9호증, 10호증의 18, 19, 62, 63,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미합중국 정부에 쌀시장 개방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을 기초로 ‘원고가 미합중국에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을 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기사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원고가 쌀시장 개방 문제는 한-미 FTA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을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국민을 기망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실을 작성·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 ○○은 원고에게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 취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별지 1 정정보도문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먼저, ① ‘원고가 미합중국에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는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

로 해석한 피고들의 의견 내지는 평가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도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 긍정

1)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제1기사는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원고가 2007. 8. 미국 쪽에 쌀 관세 화유에 종료 이후에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음을 말했다, 제1기사 ㉗ 부분)을 소개한 후, 곧이어 의견 표명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는 사실상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1기사 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에

7) 갑 9호증: 다만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외교통상부’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배척되었다.

사용된 표현인 'revisit'은 '다시 논의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바, 이 사건 보도는 위 문건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① 제1기사의 제목은 <원고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이고, 제3사설의 제목은 <김○○본부장의 쌀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이며, 제1기사와 제3사설에 '원고가 ○○ 의원에게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는 단정적 표현(제1기사㉔ 부분, 제3사설㉗ 부분)이 사용되어 있고, 제2기사에는 그와 같은 약속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미합중국 측의 관세 인하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제2기사㉓ 부분)이 있으며, ② 원래 '약속'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쌀 추가협상 약속' 또는 '쌀개방 밀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얼마든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 점, ③ 어떠한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보도 당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국민 여론이 분열되어 있었던 사회적인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보도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 긍정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쌀시장 개방은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고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해 왔었는데,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측에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서술하고, 이어 '원고가 쌀시장 개방에 관하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참여정부의 협상지침을 어기고 국무회의에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대한민국 외교부의 고위공무원인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이를 배반하는 행동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 긍정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은 원고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얼마 후인 2007. 8. 29. ○○ 의원과 ○○ 대사를 만나 나누는 이야기 전반에 관한 것인데⁸⁾,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쌀과 관련하여서는, [쌀 문제는 비록 FTA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현재의 WTO 쌀 쿼터제가 2014년에 종료되면⁹⁾, 재논의될 수 있다(rice, although excluded from the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또는 [2004년 WTO의 쌀 쿼터제가 2014년에 종료되면, 한국 정부는 쌀 문제를 재 논의할 수 있다고 김(원고)은 언급하였다(Kim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고 되어 있을 뿐, 2014년에 쌀개방을 추가협상하기로 「약속」¹⁰⁾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위 문건의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쌀개방의 추가협상을 「약속」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도는 이 사건 위키리크

8) 당시 원고는 ○○ 의원, ○○ 대사와 사이에 쌀 문제 이외에도 쇠고기, 자동차 수출입 사항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WTO에서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모든 농산물을 관세를 부여하여 개방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관세화를 통한 쌀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하였고(쌀 쿼터제, rice quota arrangement), 2004년 재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2014년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10) promise

스 문건을 인용하면서 “김○○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김○○ 본부장은 …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제1기사), “김○○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제2기사) 또는 “김○○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 쌀 수입 협상을 따로 하겠다고 …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제3사설)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하여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 ○○이 이 사건 보도에서 「약속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긍정

1) 법리

언론·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심사기준 및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를 역임하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른바 ‘공인’에 해당하고, 쌀은 우리 국민의 주된 식량이고, 얼마 전부터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국가가 쌀을 비롯한 식량에 관련되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여야 한다는 식량주권(혹은 식량안보)의 문제가 논의되어 왔으며, 쌀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경쟁력이 약한 국내의 쌀농사 산업은 곧바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쌀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그 대상자가 공적인물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인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7. 6. 30 한-미 FTA 협상안이 타결된 후 2달여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 의원이 2007. 8. 29. (빼 있는) 쇠고기, 쌀, 자동차 문제를 지적하자, 원고가 쇠고기 문제에 관하여는 ‘빼 있는 쇠고기 새 수입협정이 10월이면 마련될 것이라고 예견(Kim predicted the new born-in import protocol would be in place by October)’ 했고, 쌀 문제에 관하여는 ‘2004년 WTO의 쌀 쿼터제가 2014년에 종료되면, 쌀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Kim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하였는데, 이후 2008. 4. 11. 한미 쇠고기 협정이 체결되었고(원고의 예견과 비슷하다), 2010. 12. 3. 에는 자동차 부분의 내용이 수정된 한-미 FTA 재협상안이 타결되었으므로(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010. 10. 8.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고, 2010. 11. 12.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가 최종 쟁점임을 시사한 직후의 일이다), 결국 미국 측 ○○ 의원이 지적하였던 3가지 사항 중 마지막으로 남은 ‘쌀 문제’도 미합중국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생길 수 있었고, 또한 국회에서의 신속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등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협상 실무자들이 쌀시장 개방 문제는 쌀 쿼터제가 종료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던 점(이 사건 제2기사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다), ②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원고가 한-미 FTA 체결을 위하여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은 된다’는 식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외교상의

전략일 수도 있고, ‘쌀 문제는, 비록 한-미 FTA에서는 제외되었지만, … 다시 논의할 수 있다(rice, although excluded from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혹은 ‘쌀 농민들은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이 사안을 다룰 수 없게 할 만한 충분한 대중적 지지를 불러 모았다. 그러나 2014년에는 한국정부가 쌀 문제를 재논의 할 것(rice farmers had attracted enough public support to make the issue untouchable at this time. However, Kim indicated that the ROKG(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이라는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는 아니지만 그와 별도로, ‘현 시점’에서는 아니지만 2014년이 도래하면 재논의 할 수 있다>는 것이 원고 발언의 요체인 바, 가급적 명확한 표현을 피하고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외교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원하는 미합중국 정부로서는 원고의 위 발언을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의 시사점’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 역시 이를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인식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래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自由貿易主義: system of free trade)와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 protectionism)가 대립하여 왔고, 특히 쌀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쌀 산업 및 농민 보호에 관한 중요한 쟁점으로서, 무역정책에 관한 이념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 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블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점, ④ 언론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제보나 폭로를 명확한 확인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못하게 되면 비록 당사자의 인격권은 보호받게 되지만 언론으로서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받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박탈하여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이 사건 보도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국회의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되는 의혹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특히 제3사설은 다소 과장된 추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고위공직자인 원고의 도덕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제1, 2기사는 2011. 9. 15.자 한겨레신문 1면, 8면에 걸쳐 게재된 기사(1면 중간에 “관련 기사 8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인데, 제1기사에서는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소개하고(제1기사 ㉞ 부분), 곧이어 ‘이는 쌀 관세 특혜와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 된다.’는 표현을 하였으므로(제1기사 ㉜ 부분), 이 사건 제1, 2기사를 읽는 독자로서는 이후의 기사에서 나오는 ‘원고의 쌀 추가 협상 약속’이라는 표현을 피고 ○○의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를 전제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

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만경
판사 신봄메
판사 김석재

[별지 1]

정정보도문

○○은 지난 2011. 9. 15.자 신문 1면(종합) <김○○ ‘쌀 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8면(종합)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및 31면(○○) <김○○ 본부장의 쌀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라는 제목의 기사 및 사설에서 ‘위키리크스 문건’을 인용해 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쌀 문제는 WTO 협정에 따른 문제로서 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종료되면 WTO 내에서 협의할 문제이지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확인되어 위 보도는 잘못된 보도였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원고는 물론 정부 및 외교통상부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별지 2, 3 생략]

[판례 2]

반론보도 게재 결정을 근거로 해당 기사는 허위였다는 논리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보도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사항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나, 해당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반론보도의 게재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충실한 탐사 내지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채로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이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한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 2011가단64735 손해배상(기)

원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피고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팩스

담당변호사 황○○, 최○○

변론종결 : 2012. 1. 18.

판결선고 : 2012. 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 2012. 2.

23.부터 같은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같은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아일보, 주간동아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다.

나. 피고는 2010. 8.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910호로 원고 발행의 2010. 5. 25.자 주간동아 737호 게재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인 부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피고나 피고 산하의 중앙윤리위원회 측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피고 소속 이○○ 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

다. 같은 법원은 2010. 12. 20.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동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12포인트 크기의 태명조체로, 본문은 주간동아의 일반적인 본문 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위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반론보도문

본문 : 본지 737호(2001. 5. 25. 자)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인 부실』이란 제목의 보도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반론하여 왔습니다.

1.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감사로부터 직접 회의록 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나, 이○○ 감사는 이를 이유로 회의록을 봉인하였고, 이에 윤리위는 이○○ 감사를 징계하였다.

2. “장○○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당시 서울시 의사회 회장인 현 경○○ 의협 회장 측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이○○ 감사의 추측에 불과하다.

3. 이○○ 감사가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장이라고 주장한 장○○ 씨는 의협의 전임회장이 아닌 공주교대 교수로 동명이인인 별개의 인물이다. [끝]

라.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이후인 2011. 1. 13. “의협, 주간동아사 반론보도청구 소송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단락”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아 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가 주간동아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2010가합83910)이 지난 1월 8일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에서 주간동아사에게 의협이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주간동아 지면에 게재토록 했다.

주간동아사는 지난 2010년 5월 25일자 “횡령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인 부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회원(이○○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을 인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해 문제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동 기사 내용이 협회와 의사회원들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 실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0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민사부는 “주간동아사는 기사에서 원고 협회나 중앙윤리위원회 측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는 다른 이원보 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판시하며, 의협에서 요청한 반론보도를 주간동아에 게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주간동아사 측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11년 1월 8일 의협과 주간동아사 간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주간동아에 실리게 될 의협의 반론보도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감사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한 일이 없다는 사실과 이○○ 의 감사 징계 이유, 그리고 이○○ 감사의 인터뷰 내용 중 ‘장○○ 전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경○○ 회장이 반대했기 때문’ 및 ‘장 전 회장이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이었다’ 등의 언급이 사실과 다름을 규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문○○ 대변인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잘못된 언론의 보도로 실추된 협회의 이미지가 반론보도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의 판단 아래 최소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번 화해권고결정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 훼손·모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주간동아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동아의 커버스토리 바로 앞 지면에 상기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마. 매일경제, 메디컬투데이, 매경헬스, 데일리메디

등의 언론사는 2011. 1. 14.자로 피고가 배포한 위 보도자료를 거의 인용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바. 위 보도자료에 근거한 각 언론사의 기사가 게재된 이후인 2011. 1. 20. 위 주간동아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던 원고 소속 업○○ 기자는 피고 측에 ‘화해권고 결정은 해당 기사의 허위 여부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피고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위 보도자료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1. 2. 7. 당초의 보도자료 중 위 밑줄 친 부분만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정정문을 작성하였다(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피고 측의 소식지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당초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를 게재하였던 언론사 등에 정정 사실을 알리거나 한 자료는 없다).

아 래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협은 ‘주간동아사는 기사에서 원고 협회나 중앙윤리위원회 측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는 다른 이○○ 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였는바, 이에 반론보도문을 구한다’고 청구원인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2010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반론보도를 주간동아에 게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우선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사에의 보도자료 배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그 대상으로 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바,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도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취지와와의 연관 아래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사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신속·적절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원 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 보도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행하는 반론보도청구가 원고의 허위 보도나 원고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서도(이를 전제로 피고도 정정보도청구가 아닌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택하여 제기하였다) 위 보도자료 중 법원의 판시를 인용한 위 밑줄 친 부분 즉 『이에 대해, 2010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주간동아사는 기사에서 원고 협회나 중앙윤리위원회 측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는 다른 이○○ 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판시하며, 의협에서 요청한 반론보도를 주간동아에 게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는 표현 및 당초 반론보도청구 소송의 제기 경위, 대변인의 인터뷰 인용 부분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법원이 위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원고가 해당 주간동아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충실한 탐사 내지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채로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뉘앙스(그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억울한 피해

를 입었다는 반대 논리)를 전하려는 의도하에 위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한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언론기관인 원고의 사회적 신용 내지 평가의 저하라는 손해가 야기되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변론 전체에 나타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및 관계, 피고가 원고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앞서 본 피고의 정정 보도자료도 그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당초의 보도자료와 그 의미를 달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도자료 중 법원의 판시 인용 부분 등은 소송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장표현의 오류이지 의도적인 허위사실의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를 문제삼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보도인 해당 주간동아 기사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허위기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 단순히 피고의 소송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에 기인한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주관적으로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아

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호성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본판례]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 납치 여성을 두고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판결요지〉

가. 정치평론가이며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가 일본 정부가 인정한 북한 납치피해자인 C씨에 대해 실명을 거명한 직후 「외무성도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단정하고 있어 외무성이 C씨의 사망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정제되고 있는 對북한 외교자세에 대해 비판하려는데 의도가 있었고 피고로서는 본건 발언으로 원고 등에게 상처를 줄 뜻은 없었으며 정치적 언론으로서 고도의 보호가치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표현자체는 외무성이 C씨가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그 적시사실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갖는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자식의 생존을 기원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외무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외무성에 확인하는 등의 부담까지 강요되어 해당 발언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사회 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해당 발언에 의해 부모로서 납치피해자인 C씨의 생존을 기원해온 원고들의 심정과 명예감정 등의 인격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했음이 인정되며, 피고의 본건 발언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사 건 : 고베(神戸)지법2010(7)

2189호 위자료청구

원 고 : A₁ 외 1명

피 고 : B

판결선고 : 2011. 11. 4.

판결내용 : 일부인용, 일부기각 (항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A₁에게 50만 엔을 지불하라.
2. 피고는 원고A₂에게 50만 엔을 지불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0등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부담으로,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및 이 유

제1 청구

1. 피고는 원고A₁에게 500만 엔을 지불하라.
2. 피고는 원고A₂에게 500만 엔을 지불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 사안의 개요

본건은 정치평론가이며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가 그가 출연한 TV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딸이며 일본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인정한 C씨에 관하여 「외무성도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등으로 발언(이하 「본건 발언」으로 한다)한데 대해, 원고들이, 진실은 외무성은 현재도 C씨가 생존하고 있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은 C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외무성 간부로부터 들었다고 거짓말을 한 점에 위법성이 있고, C씨의 생존을 바라는 원고들의 명예감정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민법 709조에 근거하여 각각 500만 엔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1. 전제가 되는 사실 (증거 등을 제시한 사실 이외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들은 1956년에 결혼했으며, C씨는 원고들의 3녀로 1960년 1월에 출생했다. 피고는 정치평론가로,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이며 TV 정치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 등을 업으로 하고 있다.

(2) C씨는 대학졸업 후 1982년 영국 런던에 유학 중 1983년 7월경 런던 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되어 행방불명되었다.

(3) 일본정부는 2008년 11월까지 북한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2004년 1월 1일 시행, 이하 「지원법」으로 한다)에 근거하여 C씨를 동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로 인정했다.

(4) 북한 측은 일본정부에 대해 「C씨는 가스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일본정부는 C씨가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C씨의 귀국을 위한 접촉이나 활동을 하고 있다.

(5) 피고의 발언내용

피고는 2010년 4월 25일 오전 3시 15분 경 피고사회를 맡고 있는 텔레비아사히(朝日) 계열의 정치 토론 프로그램인 「새벽까지 생텔레비!(朝まで生テレビ!)(이하 「본건 프로」로 한다)에서 「격론! 일본의 안정보장과 외교」라는 타이틀로 일본의 외교방침 등을 테마로 토론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피고 : 「내가 이런 말 하는 것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굳이 말한다면, 방금 전에 말한 D₁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때 외무성의 넘버2인가 넘버3에게 이건 일본의 납치문제와..., 그렇게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건 일본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밝히면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미국은 일본에 지쳤다고 말이에요. 지쳤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D₂와 E₁이 만나서, 여기에서 미국은 압력에서 대화로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아모이’의 은행 이야기도 있고」

2. 쟁점

- (1) 본건 발언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 (2) 원고들의 손해 유무 및 그 정도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1) 쟁점 (1)(본건 발언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가. 본건 발언의 성질

【원고들의 주장】

(가) 본건 발언의 의미

「甲도……알고 있다」는 어법은, 그 발언자의 의견이나 추측을 말한 것이 아니라 「甲이 일정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언자가 말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발언을 듣는 사람은 「외무성이 C씨 등의 사망을 알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나) 발언의 경위

a. 직전의 발언내용이 외무성 간부의 인터뷰 내용이었다는 사실

본건 발언은 외무성 간부로부터 얻은 정보의 개진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며, 시청자로서는 본건 발언도 그 외무성 간부가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b. 인터뷰 내용이 「외무성 간부로부터 입수한 비밀 정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

직전의 발언은 비밀정보를 입수한 것 같은 어조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할 때까지 1년간 유예를 주었다고 하는, 당시로서는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한 후에, 본건 발언이 있었으며 발언의 경위는 C씨를 포함한 납치피해자의 안부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무성이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그것을 알아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c. 피고의 지위 및 활동이 본건 발언내용의 신용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사실.

피고는 본건 프로 등 TV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 출연을 해왔으며, 정치언론에 관해 각 주간지에도 적극적으로 기고하고 다수의 정치언론에 관한 저작을 출판하는 등 정치평론가로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더하여 피고는 2005년 8월 및 2008년 10월 두 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 북한의 고위층을 단독 취재했으며, 그 모습이 TV에 방영되었다. 또한 피고는 2008년 11월엔 외무성 간부 및 F₃수상(당시)을 단독으로 만나 질문을 했으며, 이 사실도 본건 발언 직후에 알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피고는 유력한 정치, 외교 관계자와의 사이에 독자적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시청자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 그렇다면 본건 발언도 단순히 피고가 추측하여 이야기했다고 생각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발언의 뜻과 같이 외무성 간부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발언의 태도

본건 발언은 언어 자체가 단정적이며, 또한 자신감을 느끼게하는 강한 어투와 몸짓으로 행하여졌다. 이러한 발언 양태로 보더라도 피고가 추측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될 만한 사정은 없다.

(라) 발언에 대한 피고 자신의 인식

피고 자신도 본건 발언이 판단은 아니며, 외무성이 말한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마스크에 대한 설명에서나 본건 소송에서의 피고 신문에서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는 추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 제3자가 받은 인상

실제로 제3자도 본건 발언이 단순한 피고의 추측을 밝힌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a. F₄외무장관 및 F₅외무장관(모두 당시)은 모두 본건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코멘트하고 있으며, 이 코멘트는 피고의 추측이 아니라 「외무성이 알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외무장관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다.

b.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의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방송인권위원회)에서도, 본건 발언을 사실에 관한 발언으로 받아들여 「방송국은 프로그램 종료 후 B씨로부터의 사실청취나 방송국으로서의 독자적인 취재로 상기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c. 산케이신문 기자(H교수)는 이번 발언에 대해 「飛ばし(도바시·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보도)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은 본건 발언이 「(C씨의 사망을) 외무성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논평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을 포함한 시청자로서도, 외무성 간부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있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바) 원고들이 받은 인상

a. 원고A₁

원고A₁은 본건 프로를 시청했으며, 본건 발언을 직

접 들었다. 그리고 본건 발언을 들은 원고A₁은 실제로, 피고가 굴지의 정치평론가라는 사실, TV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피고의 발언과 같이 외무성 간부가 진실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받아들 이게 되었다.

b. 원고A₂

원고A₂는 본건 발언이 TV에서 방영된 직후에 원고 A₁으로부터 본건 발언을 들었다. 원고A₂도 똑같이 피 고가 고명한 정치평론가라는 사실에서 본건 발언 그 대로, 다시 말하면 동인의 딸인 C씨는 이미 생존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외무성도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 이상을 종합하면, 본건발언은 외무성 간부로부터 그와같이 들었다는 사실의 적시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

(가) 본건 발언은 견해 · 의견의 표명이라는 사실

본건 발언은 「외무성이 납치피해자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침과 자세로 교섭해야 할 것인가」라는 외교방 침의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안전보장과 외교를 테마 로 한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 관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본격적인 교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않 다는 외교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었다.

본건 발언은 피고가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한 정부 와 일본 정부 간의 교섭경과, 북한 당국자 및 일본 정부 당국자에 대한 독자적인 취재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 친 피고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지식, 경험을 근거로 표 명한 피고의 견해와 의견이며, 본건 발언 내용을 외무 성 간부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것이 아니다.

(나) 「외무성은 알고 있다」고 한 발언의 취지

a. 「외무성은 알고 있다」는 본건 발언은 「외무성이 나 그 간부가 (북한의 입장이나 북한과의 교섭경위 등 을 분석한 결과로써) C씨가 사망했다고 이해 ·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시청자가 본건 발언 을 「외무성이나 그 간부는 C씨가 사망했다는 것을 사 실로 알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b. 일반 시청자가 본건 발언 내용을 「외무성 간부로 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리도 없다. 또한 가 령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발언은 피고 가 스스로 취재할 때 입수한 외무성 간부의 발언 등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허위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다) 본건 발언의 논평으로서의 성격

a. 본건 발언은 문맥상 일본 정부의 對북한 외교가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과 그 이유로서 납치피해자의 안부에 관한 외무성의 본심에 대해 피고의 이해와 견 해를 피력하는 한편 그러한 사망사실이 밝혀질 가능 성을 두려워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없었던 일본 정부의 외교방침을 비판하고, 전략을 갖고 對북한 외교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발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외무성 간부들이 납치피해자의 안부에 대해 본심 에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는 그 자체가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되는 평가적인 사항이다.

c. 피고는 외무성이 본심으로 사망의 개연성이 높 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취재를 한 외무성 간부 들의 발언에 그러한 취지가 본심으로 사실상 포함되 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확신을 갖고 있 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저널리스트로서의 판단이고 견해이다. 외무성 간부들이 사망사실을 피 고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나 피고의 본건 발언과 외 무성 간부들의 발언이 문자대로 동일한 내용임을 뜻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침해이익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침해된 이익

본건 발언에 의해 원고들의 내심의 평온한 감정을 침해받지 않을 이익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신적 평화 · 행복감 기타 구성원 상호간의 감정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

이 점에 대한 판례로는 「초조, 불안한 기분을 갖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익은 내심의 평온한 감정을 침해 받지 않을 이익으로서 불법행위의 보호의 대상이 된 다」는 최고재판소 1992년 4월 26일의 제2소법정 판

결이 있다.

(나) 본건에서의 이익의 특수성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의 감정이익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명문으로 배려되고 있다. 지원법은 피해자 등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하도록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무화(동법 3조)시키고 있으며, 상기 이익은 행정법규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상으로도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다.

【피고의 주장】

(가) 근친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판례에 관하여

민법 711조는 피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친자의 생명침해 경우 뿐이다.

본건 발언은 원고들에게 직접 향한 것도, 원고들과 딸인 C씨와의 가족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고 외무성의 본심에 관한 견해를 토론 프로그램 중의 테마에 따라 저널리스트로서 행한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순직자위관 합사 거부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에 관하여

a. 최고재판소 1988년 6월 1일 대법정 판결에 의하면, 내심(內心)의 감정을 법적이익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됨으로 딸을 생각하는 내심의 평온한 감정이나 딸에 대한 애정의 염원을 바로 법적이익으로 인정하는데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b. 납치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對북한 외교를 진지하게 논하려면 일본 외무성의 현재의 자세를 논점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논점을 둘러싼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심정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견해가 제시되는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다) 미나마타병 인정지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에 관하여

원고들이 원용하는 최고재판소 1992년 4월 26일 제 2소법정 판결은, 본건과는 전혀 사안이 다르다. 비교하면, 피고의 본건 발언은 원고들에게 직접 향한 것이 아닌데 비해 상기 최고재판소 사안에서는 당해 관청이 미나마타병 환자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고 당해 신청자를 직접 대상으로 심사행위를 했으며 그 행위가 직접 신청자에게 향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 침해행위

【원고들의 주장】

불법행위의 요건인 권리침해 내지 위법성은 피침해 이익과 침해양태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피고의 본건 발언은 전기 '나' 의 원고들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가) 피고는 고의적으로 원고들의 딸인 C씨와 G씨(이하「C씨 등」으로 한다.)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면서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하여 충격을 받은 원고들의 이익을 강하게 침해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심정이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사실의 입증도 없이 본건 발언을 한 것은 침해의 양태 면에서 극히 악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본건 발언은 즉시성, 공공성, 신빙성이 높은 TV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져 그로 인한 동요와 쇼크는 헤아릴 수 없다.

(라) 본건 발언은 허위이며 사실을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없다.

a. 피고의 발언은 허위이다.

b. 피고가 인식한 근거가 불합리하다.

c. 피고의 「외무성이 C씨의 사망을 알고 있다」는 의미내용의 발언은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는 피고가 제멋대로 만들어 낸 허위의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의 주장】

(가) 본건 발언은 사실 및 취재경과 등에 의해 입증된 진실한 발언이다.

(나) 피고는 취재를 위해 두 번 평양을 방문, 고위간부들로부터 납치피해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발언을 직접 들었으며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는 밝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 2008년 11월 8일 피고는 4명의 외무성 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8명의 사망을 전제로 북한에 대해 사망경위 등을 설명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8명 전원이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교섭하고 있다는 외무성 간부들의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예측과는 달리 피고와 같은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그러한 교섭은 총리의 지시가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 2009년 11월 11일 X씨는 피고와 인터뷰한 자리에서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테러지원국의 해제라는 것은 이제 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납득하는 형태」라는 것은 8명이 생존해서 귀국하는 것이며, 피고는 이 말을 듣고 8명이 생존하여 귀국하는 교섭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마) 이상의 취재, 특히 전기(다)의 외무성 간부 및 X씨와 주고받은 말을 보면, 피고의 본진 발언은 외무성이 8명의 생사에 관해 그 명분과는 달리 내심으로는 생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말한 것이며, 그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취재결과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중략)

제3 당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전기 제2, 1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하 「전제사실」로 한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998년 3월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이하 「가족회」로 한다)가 발족, 원고들은 처음부터 맨

버로서 발족 이후 현재까지 납치피해자 구출을 위한 서명운동과 대정부활동을 계속해왔다.

(2) 2003년 9월 제1회 일·북한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납치피해자에 관해 「5명 생존, 8명 사망」이라고 일본 측에 전했으며, 동년 10월 생존한 5명의 납치피해자가 일본에 귀환했다. C씨에 대한 북한 측의 설명은 가스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망했다는 8명의 사인에는 부자연사가 극단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었다. 부자연의 예로는, 일본에서는 수영을 못했던 피해자가 긴급출장 중에 해수욕을 하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케이스라든가 건강했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케이스 등이 있었다.

유골에 대해서는 8명 중 6명의 유골이 호우로 흘러 내려 갔다면 수도 제출은 하지 않았으며, 2명에 대해서는 유골이 제출되었으나 2명 모두 감정결과 본인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

또한 사망확인서는 모두가 동일한 병원에서 발행되고 찍힌 도장도 동일했으며, 북한 측도 이것들이 당시 급히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C씨를 포함하여 안부가 불명한 납치피해자는 모두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에 대한 교섭을 계속하기로 했다.

2007년 2월 일본 정부는 재차 북한에 대해 생존자의 귀국,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동년 9월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납치문제는 일본의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명, 안전에 연관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규정,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귀국을 계속 요구했다.

(3) 피고는 북한이 발표한 8명의 사인에 의문을 느껴 평양으로 가서 직접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 납치문제 및 일본 정부의 對북한 외교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

피고는 2005년 8월 첫 번째 방북에서 외무부의 E3

외무차관과 E1·북한 국교정상화 담당 대사를 상대로 취재를 했다. E1대사는 8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설명을 되풀이했으나 피고는 「당신의 답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국민에게 확인시키려면, 8명 중 누구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납치했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범행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서서 일본 측에 설명토록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 대사는 E2총서기도 비밀공작대의 해체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취재는 동월 15일의 선데이프로젝트에서 취재경위와 그 내용의 일부가 방영되었다.

피고는 2008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 E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E4·북한 국교정상화 담당 대사를 취재했다. 피고는 8명 모두 사망했다고 말하는 E5대사에게 납치피해자 중 1명의 유골을 제3국인 미국에서 감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E6대사는 「믿을 수 없다면 제 3국에서 재감정하자는 것은 원래 우리가 제안했던 것인데 일본이 반대했다」면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8명 중에는 생존자가 없으나 그 밖에 복수의 일본인이 있다. 일본 측이 제재를 풀면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취재도 2008년 11월 11일 선데이프로젝트에서 취재내용의 일부가 방영되었다.

(4) 2008년 11월 8일 피고는 X씨를 포함한 4명의 외무성 간부를 상대로 취재를 하는 자리에서 일본정부는 납치피해자들의 생존을 전제로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북한은 끝까지 8명이 사망했다는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두 번에 걸친 방북취재 결과를 전하면서 E7대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북한 측이 8명 전원의 사망을 계속 주장하려면 이를 전제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납치하여 어떠한 경로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각자의 케이스에 관해 범행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경찰력도 동원하여 신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기 외무성 간부들은 「우리들은 B씨와 같은 의견

이지만 총리대신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행동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2009년 11월 11일 피고는 X씨를 상대로 단독취재를 하면서 8명의 납치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X씨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노력은 해봤지만 실제로 테러지정 해제 혹은 납치문제에 관해 눈에 보이도록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해제된다는 것은 역시 무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했다는 8명의 조사에 관해 X씨는, 북한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고 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면서 「이미 E8씨가 결단을 내린 그러한 결과에 대해 말하자면, 다시 새로운 뭔가가 없는 한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러한 설명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론만 말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실한 설명이 없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말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했다.

(5) 피고는 상기(4)의 두 번에 걸친 외무성 간부에 대한 취재를 통해, 외무성 간부들은 본심으로는 북한에 대해 8명의 사망을 전제로 교섭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전제사실(5)와 같이 2010년 4월 25일 본건 발언을 했다. 피고의 입장에서 본건 발언의 취지는 정체되고 있는 일본의 對북한 외교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8명 전원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섭을 하고 있으나 외무성의 본심은 8명의 사망을 전제로 교섭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본심을 지목하여 일본의 외교자세에 대해 비판하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피고로서는 본건 발언으로 원고 등에게 상처를 줄 뜻은 없었다.

(6) 피고의 본건 발언을 보고, 가족회와 그 지원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회의회(이하 「구출회」로 한다)는 2010년 5월 11일 텔레비아사히(朝日)와 피고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두 사람을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말했다」고 항의했다.

(7) 원고들을 포함한 가족회는, 피고의 본건 발언에 관해 회합을 갖고 피고가 정보원이라고 밝힌 외무성에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0년 5월 19일에 개최된 자민당납치문제대책특명위원회(이하 「특명위원회」로 한다)에서는 가족회의 F₇사무국장, 구출회의 F₈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본건발언이 논의되었다. 본건발언에 관해 F₉최고고문은 외무성 내에서 청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F₁₀외무장관 정무관은 외무성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당일 F₄외무장관(당시)은 안부불명의 피해자는 모두 생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제로 북한과 교섭하고 있고, 그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므로 피고의 본건발언은 전적으로 잘못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8) 그 후 외무성은 부내에서 청문조사를 통해 외무성 간부 3명에게 최근 피고와 만나 본건 발언과 같은 내용을 말한 일이 있는지를 질문했으나 3명 모두 피고와 만난 일이 없으니 그러한 말을 할리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결과는 2010년 5월 27일의 특명위원회에 보고되었다. F₁₀정무관은 정부방침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지도하겠으며, 외무성은 앞으로도 계속 생존을 전제로 교섭을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9) 2010년 5월 30일의 본건 프로의 방송에서 피고는 본건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깔끔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죄송하다. 실은 외무관료의 취재를 통해, 8명의 피해자를 전원 돌려보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가져왔는지도 모른다. 납치피해자의 구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족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텔레비아사히의 아나운서는 피고의 발언에 이어 「텔레비아사히의 입장에서도 납치피해자 여러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0) 가족회와 구출회는 2010년 6월 2일 「TV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죄도, 발언의 취소도 아니다」라면서 재차 항의성명을 내는 한편 동월 10일 BPO의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방송인권위원회」로 한다)에 본건 발언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방송국에 대해 피고의 본건 발언 철회와 사죄, 피고의 사회자 교체 재고 등 구제를 신청했다(이하 「본건 구제신청」으로 한다).

(11) 피고는 2010년 8월 8일자로 원고들에게 서신을 송부했다. 그 내용은 「나의 난폭한 발언이 A₁씨, A₂씨를 비롯하여 납치된 분들의 가족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사죄하는 한편 「일본정부가 북한과 교섭하지 않고 있으면서 교섭하는 것처럼 가족 여러분을 위시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기본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생명을 걸고 교섭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본건 발언의 취지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12) 2011년 3월 10일 방송인권위원회(위원장, 위원장대행 2명, 위원 6명 등 9명으로 구성)는 본건 구제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통지와 공표를 했다.

가. 상기 결정 중에서 동위원회는 본건 발언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프로그램 중에서 B씨가 생사의 확증이 없는 2명의 납치피해자에 대해 실체적 근거의 제시 없이 『생존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한 것은 가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B씨의 발언은 가족의 심정을 깊이 상하게 하고, 강한 불쾌감을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부적절했다.

그러나 B씨의 발언 전체를 보면 납치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막힌 시각에 있어 그것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굳이 비판과 고언을 올렸다는 발언의도에 비추어보면 그 발언이 가족의 심정을 깊이 해치고 강한

불쾌감을 갖게 했다고 하더라도 논평전체로서는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허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건 제기에 의해 자신의 입장이 부정되어 불쾌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디어 산업 내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B씨의 발언에 관한 방송국의 책임으로는 이름을 특정한 2명의 납치피해자에 대해 근거의 제시 없이 『생존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여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대응방식 문제에 한정된다.

방송국은 프로그램 종료 후 B씨로부터의 사정 청취나 방송국으로서의 독자적인 취재로 상기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못한 점을 인정, 두 번에 걸쳐 사죄하고 있으므로 일단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사죄에 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을 취했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방송윤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보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도록 한층 노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 상기 결정에는 「...B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B씨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의 명예와 그 밖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B씨에게 있어서는 취재원을 비닉하면서 그 발언의 진실성, 상당성의 입증, 공정한 논평의 법리 적용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존재여부가 검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한 위원의 보충의견이 첨부되었다.

(13) 2011년 12월 22일 F5외무장관(당시)은 원고A1과 면담한 자리에서 본건발언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 쟁점 (1) (본건 발언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1) 본건 발언의 성질

TV 방송 상의 어떤 표현에 있어, 그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데 있어서는, TV 방송 일반 시청자의 보통의 주의와

시청방식을 기준으로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재여부 결정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당해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발언 전후의 문맥, 발언의 태도, 당해 프로그램의 방송내용, 발언자의 입장, 발언내용 전체에서 받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를 본건에 관하여 검토한다. 피고의 본건 발언은, C씨에 관하여 「외무성도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며, 통상적인 언어의 의미에서 본다면 외무성은 C씨가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건 프로는 저명한 정치인, 정치평론가 등이 다수 출연하는 정치 토론 프로이며, 본건 당일의 방송내용은 「격론! 일본의 안전보장과 외교」라는 타이틀로 일본의 외교방침 등을 테마로 한 토론이었다.

본건 발언의 전후는 일본 정부의 對북한 외교의 자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본건 발언 직전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그 사이에 깔끔하게 납치문제의 교섭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가 그러한 교섭을 하지 못해 미국은 지쳐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는 흐름에서 「성실한 교섭한다는 것은 말이지」라고 교섭태도에 관해 언급하면서 「G씨와 C씨는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북한 측은 생존하고 있지 않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외무성도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발언자인 피고는 본건 프로의 사회자의 입장에 있으며 저명한 정치평론가이며 또한 취재목적으로 두 번이나 북한에 들어가 단독으로 북한 측 고관들과 인터뷰를 하는 한편 외무성 간부들과는 對북한 외교에 관해 두 번이나 극비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피고는 본건 발언 전에 「나 이건 말할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굳이 말한다면...」라고 자신이 취재한 특종을 이제부터 밝히겠다는 듯한 전제를 깔고 말했다. 그

후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이유에 관한 발언은 공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 피고의 상기 외무성 간부와와의 인터뷰가 그 근원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것들은 피고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발언에 있어 비록 토론 프로지만 본건 발언의 전후는 피고가 단독으로 발언을 계속하는 가운데 「G씨와 C씨는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로 하고 있다」고 실명을 거명한 직후 「외무성도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단정하고 있어 일반시청자에게는 외무성이 C씨 등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발언은 외무성의 교섭태도에 대한 피고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C씨 등을 거명하면서 「외무성도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구체적,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피고의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이나 취재경력으로 볼 때 독자적인 취재로 특종을 얻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외무성 간부에 대한 독자적인 취재의 성과로서 본건 발언에 이르게 되었는데 TV 방송 일반 시청자의 보통의 주의와 시청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외무성은 C씨가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므로 이는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재여부 결정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발언은 외무성이 C씨의 사망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하 「본건 적시사실」로 한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피침해이익과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본건에서 원고들의 침해된 이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의 생존을 생각하는 기분 그 자체의 속마음은 모욕행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각 보호받아야 할 이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의 피해자 가족이며,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지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국가가 납치피해자의 안부확인

나 귀국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고 안부정보를 납치피해자 가족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상담에 응하는 등의 대응과 함께 귀국한 납치피해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원고들은 다른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와 외무부도 납치자 문제해결과 함께 C씨를 포함한 납치피해자들의 생존을 전제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활동도 공적인 것이며 C씨의 생존을 기원하는 원고들의 마음도 피고도 포함하여 공적으로 모두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의 입장은 특별한 법적보호를 받고 정부와 함께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로서 납치피해자인 C씨의 생존을 기원하는 원고들의 감정은 법적보호의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 본건 발언에 의해 원고들의 상기 이익이 침해되어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건 발언의 양태, 발언이 주는 인상, 적시사실의 합리적 근거의 유무, 원고들의 사회적 입장, 본건 발언에 의한 원고들의 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발언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본건 발언이 주는 인상은 전기(1)과 같이 C씨를 지명하여 「외무성도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구체적,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이며 피고의 경력이나 독자취재의 경험, 전후 발언의 문맥상 특종으로서의 진실성이 있는 발언으로, 일반 시청자의 인상으로서도 외무부가 C씨 등에 대해 생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본건 적시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본건 적시사실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의 외무성 간부들에 대한 두 번에 걸친 취재에서는 전기 인정사실(4)와 같이 외무성 간부들에 대해 「C씨 등이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든가 「외무성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등 본건 적시사실을 직접 나타내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취재 중의 발언에서 본건 적시사실이 합리적으로 추인(推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전기 인정사실(4)에 의하면 첫 번째의 외무성 간부 4명에 대한 취재에서는 사망했다는 8명에 대해 북한 측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피고의 의견에 외무성 간부들이 동의한 사실, 두 번째의 X씨에 대한 단독취재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무리일 것이라는 사실, 북한이 한 번 결단을 내려 공표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사실, 북한의 설명에 대해 결론뿐만 아니라 왜 그러느냐는 것을 정직하게 말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외무성 간부들이 발언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무성 간부 4명에 대한 취재에서 사망했다는 8명에 대해 북한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만 한다는 피고의 의견에 외무성 간부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외무성이 C씨 등을 포함한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X씨에 대한 단독취재에서, X씨는 북한의 8명이 사망했다는 설명에 대해, 「솔직히 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설명은 납득되지 않아요」라고 발언하여 8명이 사망했다는 설명에 의문을 표명했으며, 발언전체로 보아 외무성은 C씨를 포함한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들의 입장은 납치문제의 성질상 그 해결을 정부의 외교교섭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정부나 보도기관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자의 입장에 있다. 원고들은 본건 발언에 의해 딸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놀라고 동요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딸이 생존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외교교섭을 하고 있는 외무성이 C씨가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무성의 공식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납치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외무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 이제

는 딸을 구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큰 절망감과 함께 정부, 정치인, 외무성을 위시하여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절망감을 갖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발언을 하게 된 취지(인정사실(5))는, 일본의 외교자세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갖는 발언이고 정치적 언론으로서 고도의 보호가치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표현자체는 외무성이 C씨가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그 적시사실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갖는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건 발언은 본건 적시사실과의 관계에서는 진실이 아니며, 또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피고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는 하나 그 오류는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자식의 생존을 기원하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외무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외무성에 확인하는 등의 부담까지 강요되었으므로 본건 발언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 발언에 의해 부모로서 납치 피해자인 C씨의 생존을 기원해 온 원고들의 명예감정 등의 인격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했음이 인정되며, 피고의 본건 발언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3. 쟁점 (2) (원고들의 손해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이상을 전제로 본건 발언에 의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자식의 생존을 바라는 감정을 훼손당하고 외무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외무성에 확인하는 등의 부담까지 강요당해 그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중대하다. 더욱이 피고의 본건 발언은 그 본래의 취지가 일본의 對북한 외교자세에 대한 비판이었으나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발언의 다음달 본건 프로의 방송에서 발언취지에 대해 해명하면서 발언방법에서 오

해를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납치피해자의 구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족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드리고 가슴에 상처를 준 점 마음속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신을 발송, 「저의 난폭한 발언이 A₁, A₂씨를 비롯하여 납치된 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심정을 상하게 한 점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과한다」고 사죄한 사실, 피고가 신문에서 「본심은 일본의 對북한 외교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원고들의 심정과 같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납치피해자의 가족분들과 공동으로 정부와 싸우고 있는 심정」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그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는 원고들 각자에게 50만 엔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 출처: 『판례시보』 2136호/P.95~106
- 번역: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판례]

보도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된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언론사는 면책된다.

(Durando v. Nutley Sun)

〈판결 요지〉

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이 소송에서 신문사 편집장은 신문 전면에 “지역 인사”로 표현한 원고를 체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사기로 체포된 것으로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의도된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음을 판결한다.

나. 보도에 오류가 있으나,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잘못된 사실을 게재하였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편집장은 오류를 수정하려고 하였으며, 신문지면의 공간에 맞추기 위하여 마지막 세 문단을 삭제한 것은 독자를 오도하려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편집장 본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글을 게재할 당시 편집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글을 준비하는 과정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편집장이 비록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사실관계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뉴저지주 대법원

(New Jersey Supreme Court)

원고: Ronald Durando, Gustave Dotoli

피고: The Nutley Sun 등

사건번호: No. A-105 BL 2012 48520

판결선고일: 2012년 2월 28일

결 론

뉴저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사건으로 원고는 신문사인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2심 모두 피고 승소 약식판결이 이뤄졌으며 원고는 대법원에 재차 항소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피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 Rabner(재판장), Albin, Long, Patterson, Weifing(한시적 참여) 판사는 이에 동의했고, Hones, LaVecchia 판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유

뉴저지의 관습법은 공공의 사안에 관해서는 표현에 있어 조금의 부주의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자유롭고 왕성한 언론, 자기 검열과 감당할 수 없는 소송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우리 사법부는 공공의 사안에 관한 정보의 유통이 불가피한 사람의 실수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개인의 명예라는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기자나 편집장이 ‘의도된 악의’¹⁾를 가지고 글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기사에 담겨 있는 오류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본 사건에서 지역 주간신문의 1면에 “두 명의 지역 인사”가 주식사기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오보를 냈다. 두 원고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소송장 안에 주가조작의 혐의를 받았지만 체포된 적은 없다. 11면에 이어서 실린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원고가 투자자를 속여 9백만 달러를 취득한 민사상의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면의 기사 어느 곳에서도 원고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나 구절은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신문사와 그 모회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의도된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승소 약식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본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유지한다. 비록 이 사건에서 언론은 의심의 여지없이 영성한 실수를 저질렀으나, 약식판결에 제출된 증거에 기대 판단한 결과, 그 제출된 증거들은 부주의한 편집장의 행동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편집장이 오류를 지각하고 있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진실을 묵살하려고 한 행동임을 밝히는데 부족하다고 판결한다.

I.

2005년 11월 15일, 증권거래위원회는 미 연방 코네티컷 지방법원에 Durando와 Dotoli가 여러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장을 제출하였다.²⁾ 소송장은 Durando와 Dotoli가 부실한 회사를 인수해 회사명을 바꾸고 허위 회사 정보를 통해 주가를 올려 대중에게 과대평가된 주식을 팔아 거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pump and dump’ 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Durando와 Dotoli는 9백만 달러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Durando와 Dotoli가 불법 내부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 기업공개내역을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두 사람이 챙긴 이득 모두를 환수하고 두 사람을 영구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³⁾

2005년 11월 17일 North Jersey Media Group이 소유한 The Record의 기자 Lynn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소송에 대해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제목은 ‘세 명의 뉴저지 남자가 9백만 달러의 주식사기혐의

1) 의도된 악의란 진실이 아님을 지각하고 있거나, 또는 진실을 신중하지 못하게 묵살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피고가 약식판결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본 법정은 사실관계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으로 서술한다. G.D v. Kenney 205 N.J. 275, 304 (2011) 참조.

3) 이 부분에 대해 Durando와 Dotoli는 증권거래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

를 받고 있다”였다. 다음은 이 기사의 전문이다:

세 명의 뉴저지 남자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의 가격을 부풀려 죄 없는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겨 9백만 달러의 이득을 챙겼다고 증권거래위원회가 밝혔다.

화요일에 코네티컷 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문제의 회사는 코네티컷주 Norwalk시에 위치한 PacketPort.com이라고 하는 통신 회사이다.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Ronald Durando(48)은 ‘Linkon’이라는 파산한 회사를 매입하여 Gustave Dotoli(70), 변호사인 Robert H. Jaffe(69)와 함께 회사명을 PacketPort.com으로 바꿨다. Durando는 CEO가 되었고 Dotoli는 재무 책임자가 되었다.

Durando는 IP Equity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주식 전문지에 돈을 내고 PacketPort가 인터넷 전화서비스 업체의 매우 유망한 기업이라는 소식을 실었다.

이 광고로 인하여 주가가 19.5 달러로 올랐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리고 Durando, Dotoli, Jaffe는 이 ‘가치 없는’ 주식을 팔아 넘겨 9백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주식을 뉴욕의 주식브로커인 Coons 3세를 통해 팔았으며,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세 명은 PacketPort의 재무재표 또한 조작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장에는 Durando, Dotoli, Jaffe, Coons와 두 명의 IP Equity 고위 인사인 Agrawal 과 Kunzog를 피고로 명시하고 있다. 이 소송장은 불법이득의 환수와 몇 가지 증권거래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민사소송은 New Haven에 위치한 미 연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이 기사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장의 내용을 잘못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소송장과 기사 어느 것도 Durando와 Dotoli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North Jersey Media Group은 The Nutley Sun이라는 주간지 역시 소유하고 있다. 이 신문은 Nutley 마을과 그 주변에 5,000명의 정기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The Nutley Sun의 편집장인 Paul Milo는 Lynn의 기사를 재판(再版)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2008년 12월 5일 Milo는 The Nutley Sun의 12월 8일 특별판(정기 구독자 이외에 2,500명의 비정기구독자에게도 배포됨)을 위해 이 기사를 준비하였다. Milo는 원래 기사의 마지막 3분단을 신문 지면의 공간에 맞추기 위하여 삭제하였다. 그리고 기사 제목에 “지역 인사 주식사기로 고소당하다”라고 썼다.

그 다음날인 12월 6일 Milo는 12월 8일자 특별판 1면에 세 개의 티저를 실었다.⁴⁾ 신문 전면 티저의 제목은 이러하다: “두 지역 인사가 ‘pump and dump’ 수법의 사기로 체포되다, 페이지 11.” 이 제목은 1면 톱기사의 제목보다 더 작게 프린트 되었을 뿐 아니라 1면 톱기사의 제목처럼 굵은 글씨체로 처리되지도 않았다. 또한 이 기사의 제목은 원고의 이름인 Durando와 Dotoli를 표기하지 않았다. 어찌 되었건, ‘체포되다’라고 하는 구절은 오류였다. 이러한 오류는 11면에 실린 기사에는 표기되지 않았다.

발행 다음날인 12월 9일, 원고의 변호인 The Nutley Sun지에 이메일을 보내 그의 의뢰인이 체포되지 않았음을 알렸다. 원고의 변호인은 기사 철회를 요청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압박했다. 같은 날 Milo는 발행인과 상의한 후 North Jersey Media Group의 사내 변호사인 Dina Sforza에게 원고의 변호인이 보낸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Sforza는 철회 데드라인 하루 뒤인 12월 14일까지 Milo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Sforza는 12월 15일 원고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North Jersey Media Group의 변호인인 Jennifer Borg와 이 일을 상의할 수 있을 때까지

4) ‘티저’란 신문 1면의 간단한 헤드라인으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다.

고소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변호인은 Sforza에게 12월 19일 이후까지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기사 정정의 최종 승인자인 Borg는 친척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병원에 가 있어 12월 15일이 있는 주에는 회사에 없는 상태였다.

12월 19일 Borg는 기사 정정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신문은 12월 22일자 판에 크고 굵은 글씨체로 이를 게재하였다.⁵⁾ 하지만 이 에디션은 문제의 기사를 읽었던 2,500명의 비정기구독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12월 16일 원고의 변호인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II.

A.

12월 16일에 제출된 원고의 고소장은 피고 The Nutley Sun과 North Jersey Media Group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다. 10개월 후 보충되어 제출된 고소장에는 이와 별도로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인 정신적 피해, 부주의로 인한 정신적 피해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약식판결로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문제는 1심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의 관한 것임은 인정하였으나 처음에는 약식판결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Milo가 기사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후에 Milo가 의도된 악의가 있었는지를 재심사한 결과 피고 승소 약식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의도를 판단하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진술서였다.

B.

Milo는 문제의 기사가 실린 거의 1년 후에 진술을 하였다. 그는 본인이 The Nutley Sun 과 The Belleville Times라는 또 다른 주간지의 편집장임을 진술했다. 이 직책에서 그는 편집과 운영에 관여하였고 10명의 직원을 관리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투자 산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형사소송을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문제의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Milo는 Lynn의 기사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읽어보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있어서 제대로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체포되다’라는 단어를 쓰며 본인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했다. 원고 측 변호인과의 질의에서 그는 ‘체포되다’라는 뜻의 의미와 그가 원고가 체포됨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당하였다고 믿고 있었는지를 답하였다.

Q: 당신은 당신이 이 사건이 형사소송인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원고가 체포되었다고 쓴 것은 맞습니까?

A: 네

Q: 그럼 ‘체포되다’라고 썼을 때 무슨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A: 그들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에서요.

Q: 왜 원고들이 체포되었다고 믿었습니까?

A: 글썄 그건 제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밖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Q: 그럼 당신이 이 기사를 편집했을 때, 원고들이 체포되었다고 믿었습니까?

5) 티저와 같은 자리에 실린 이 정정보도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The Nutley Sun사는 12월 8일자 A1면에 실린 “지역 인사 pump and dump 수법으로 체포되다” 헤드라인을 정정합니다. Durando와 Dotoli는 체포된 것이 아니라 연방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The Nutley Sun사는 Durando씨와 Dotoli씨가 입었을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개월 후, Milo씨는 티저에 오류를 범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다.

A: 제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Q: 그들이 체포되었다고 확신했습니까?

A: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Q: 그럼 당신이 그들이 체포되었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던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가요?

A: 네

Q: 원고가 체포되었는지 아닌지 당신이 의심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A: 네 가능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의심을 했었는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C.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피고 승소 약식판결을 내리며 원고가 의도된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는 Milo가 신중한 편집장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 이상의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Milo가 진술과정에서 그가 보도를 게재할 당시 체포와 관련하여 확신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 하나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게재 시점에서 확신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피고가 보도의 사실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III.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도된 악의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결하며 배심원 재판을 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고 불행한 ‘체포되다’ 라는 용어의 부정확한 표현이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논리가 Milo 본인의 머뭇거리는 듯한 “원고가 정말 체포되었는지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언 하나에 기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외에 어떤 ‘무모한 진실의 목살’에 대한 증거도 없음을 지적했다.

본 법정은 항소할 수 있는 권리증(certification)을 원고의 요청대로 발부하였다.⁶⁾ 또한 뉴저지 언론연합이 ‘amicus curiae’⁷⁾로서 본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6) 원고는 고의적 정신적 피해, 부주의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은 항소하지 않았다. 만약 항소가 되었다면 이러한 고의적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 등은 명예 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발생시켰다고 주장되어지는 피고의 동일한 행동(기사 제목에 오류를 냄)에서 파생된 결과이기 때문에 똑같이 ‘의도된 악의’ 기준이 적용된다.

7) amicus curiae란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느 한쪽을 지원하는 서류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IV.

A.

우리주의 관습법은 뉴저지주 헌법 제1조 제6항에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공적인 사실을 다룰 때에는 더 강화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⁸⁾ 우리는 이러한 자유에 의도된 악의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데, 이는 왕성하고 제한되지 않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논의가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훼손 소송을 변호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자체가 이러한 논의를 방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러 케이스에서 우리 사법부는 개인이 공적인 일을 다룬 미디어를 상대로 그 미디어의 오류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소송을 다루었다.

원고 역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소송에 '의도된 악의'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적용됨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의도된 악의가 있었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음으로 1심의 약식판결을 유지한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계속 나오는 '의도된 악의' 라고 하는 판결 기준은 재판이 열리면 배심원이 적용하는 기준이다. 지금 문단에 나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이라는 기준은 의도된 악의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이러한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또 다른 기준이다.

원고는 제출한 증거가 명백하고 설득력있기 때문에 약식판결이 아닌 배심원이 참석하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점에 대해 판결하기 위해 본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죄의 필요조건, 의도된 악의의 기준, 그리고 이를 판결하는 약식판결의 기준에 대해 언급한다.

B.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보도를 한 미디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1) 피고가 원고에 관한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다. (2) 그 보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3) 피고가 이러한 보도를 '의도된 악의' 를 가지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대중에게 허위사실을 사용하여 원고를 묘사하였을 때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1) 유포된 허위사실이 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원고 본인에게 매우 모욕적이다. (2) 피고가 보도된 것의 진위여부 확인을 무모하게 묵살하였다.

허위사실 유포를 증명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조건 중 두 번째 조건은 권리장전 제1조와 우리주의 관습법안의 의도된 악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다음으로 본 재판부는 표현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의도된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언급한다.

C.

의도된 악의의 기준은 미 연방 헌법 권리장전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다. 미 연방대법원은 권리장전 제1조가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된 일에서 발생한 언론의 오류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의도된 악의란 어떠한 것이 사실이 아님을 지각하고 있거나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무모하게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이러한 의도된 악의는 '설득력 있게 명백한' 정도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은 공공의 이슈의 논의는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다.

8) 뉴저지주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요구하는 권리장전 제1조의 보호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발언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Senna, 484-485 페이지 참조.

관습법에 따른 좀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기 거부하면서,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사들을 재산의 위협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 사법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연방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도된 악의라는 판단 기준을 공적인 일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에 관한 케이스에 한하여 적용해 왔다. 언론은 대중의 건강, 안전, 규제받는 산업, 그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등을 다룰 때에는 좀 더 강화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오늘날 뉴저지에서는 언론뿐 아니라, 비언론도 공인을 상대로 하든 개인을 상대로 하든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발언은 의도된 악의라는 판단 기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략)

V.

피고 승소 약식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원고는 합리적인 배심원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Milo가 의도된 악의가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법원이 비록 약식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쪽에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증거를 분석하지만,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이라는 판단 기준은 원고에게 ‘50% 이상의 확률을 증명해야 하는 기준’ 보다 조금 더 무거운 증명 기준을 요구한다”⁹⁾

Costello 판례는 원고가 지어야 하는 무거운 입증의 책임을 나타내는 예이다. 그 판례에서 Ocean County Observer라는 신문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서명도 되지 않은 고소장을 이미 접수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그 고소장의 내용이 경찰관이 수갑 찬 여성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찰관은 명예훼손으로 신문사를 고소했다.

우리는 그 기사가 완벽히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 약식판결을 내렸다. 기자가 부주의하기는 했지만 의도된 악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미 연방 헌법 권리장전 제1조는 이러한 오류가 무모하거나 고의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호하고 있다.

Costello 판례에서도 그러하였듯이 특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약식판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소송을 변호해야만 하는 비용만으로도 자유로운 언론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조그만 지역 언론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법부는 1심 법정들에게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케이스는 특히 더 신중히 생각한 후에 약식판결을 내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할 것이다.

VI.

Milo는 의심의 여지없이 “두 지역 인사가 ‘pump and dump’ 수법의 사기로 체포되다, 페이지 11.”라는 티저를 쓸 때 부주의했다. Lynn이 작성한 최초의 기사엔 체포되었다거나 형사기소 당했다는 그 어떤 단서도 없다. 하지만 약식판결 단계를 넘어 배심원 재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지 편집장이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를 했다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대신 우리는 합리적인 배심원이 Milo가 실수를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이 기사를 게재하는 당시 진위여부에 관하여 심각한 의심을 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그 말은 곧 Milo의 행동이 너무나도 무모하여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게재한 것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지를 배심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거들을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위의 질문에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러한 결론의 이유는 많

9) 권리장전 제1조 조항의 소송이든 관습법에 의거한 소송이든 ‘의도된 악의’ 기준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약식판결의 기준 또한 동일하다. Rocci, 159페이지 참조.

이 있다.

Milo의 영성한 일처리를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Lynn의 기사는 명백히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소송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Milo 자신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Lynn의 기사는 세 명의 남자가 주가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겨 9백만 달러의 이익을 취했다고 적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기는 파산상태의 회사를 사들여 투자자들에게 대한 허위광고를 통해 이루어 졌다.

만약 Milo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장을 실제로 읽었더라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이 소송장은 Durando와 Dotoli를 연방 주식거래법, 불법 내부자거래, 허위 기업공개내역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주 형법에 따르면 개인이 '남을 속여 타인의 재산을 취했을 경우' 이를 절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Lynn의 기사를 읽으면 원고가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Milo의 실수는 용납되기 어렵다. Lynn의 기사에는 민사소송만이 언급되어있기 때문이다.

증거를 분석한 결과 Milo의 실수가 있을 수 없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짓기 힘들다. 그는 바쁜 스케줄에 쫓기고 관리해야 하는 직원이 많은 편집장이었다. 그 와중에 '고소당하다'를 '체포되다'로 잘못 전달하는 오류를 범했다.

중요한 점은 원고의 이름이 티저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11면에 실린 본래의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원고의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그들이 민사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가 기사에 실린 오류를 알았을 때 그는 그 오류를 수정하려는 조치를 취했다.¹⁰⁾

Milo가 Lynn의 기사의 마지막 세 문단을 지면 크기에 맞추기 위해 삭제한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 세 문단 중 하나가 이 사건이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긴 했지만, 지워진 다른 한 문단은 원고가 여러 가지 연방 주식거래법을 어겼다는 점이 적혀

있었다. 따라서 Milo가 고의적으로 독자를 오도하려고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심과 2심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본 법정도 Milo가 원고의 변호인과 했던 대화 중 그가 원고들이 체포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진술도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인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전부는 Milo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며 그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다는 것뿐이다.

언론의 자유는 더욱 강화된 보호를 받으며, 제출된 증거가 의도된 악의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본 법정 역시 약식판결을 확정한다.

비록 원고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소송이 기각되지만 피고는 너무 결과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과 관습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그에 따른 자정 노력을 요구한다. 언론의 자유 보장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에게 진실과 정부의 일을 바로 알리는데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류는 그러한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다. 또한 부주의한 보도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큰 결함이 될 수 있다.

VII.

본 법정은 피고 승소 약식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한다.

Hoens, LaVecchia 판사 반대 의견

본 법정의 과반수의 판결문은 대부분 지금 이 사건의 논점과 관련이 없는 문제의 논의로 채워져 있다. 물론, 이 논의 자체에는 본인은 동의한다. 따라서 본인은

10) Milo의 오류가 특별 한정판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로는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했다는 동기를 증명할 수 없다.

과반수가 표현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위대한 원칙에 대하여 동의한다. 또한 과반수가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흐름이 때때로 인간의 실수에 의한 오류를 발생 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 부분도 본인은 동의한다.

대체로 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밸런스를 찾아 가는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는 과반의 설명에도 동의한다. 과반의 명예훼손에 관한 설명은 대체로 본 법정의 최근 판결문인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본인의 명예가 거짓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와 다르지 않다(Salanzo v. North Jersey Media Group 판결문 참조).

또한, 신문기사가 주 대상인 소송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의 과반의 설명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본인은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 과반수의 법에 대한 해석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 3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신문 전면의 티저에 포함된 오류의 상대적 과급효과에 대해 간과하였고, 약식판결의 기준에 관해 잘못된 해석을 하였으며, 과반수 스스로가 부정하는 새로운 언론 보호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I.

과반이 신문 1면 티저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티저 제목에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반은 신문 1면 헤드라인에 큰 글씨체로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되어지는 글을 분석할 때 본 법정은 그 글의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뉴스의 헤드라인을 본 기사와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 법정은 줄곧 헤드라인과 본 기사를 하나로 보고 분석해왔다.

결과적으로 만약 문제가 단지 기사의 헤드라인 속의 몇 마디뿐이라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오류가 헤드라인에 있다 하더라도 기사 첫 문장에서 그 오류를 바로 잡는다면 그러한 오류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티저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티저란 말 그대로 본 기사와는 분리되어있는 신문 1면의 독립된 기사이다. 오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본문기사가 바로 붙어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티저는 보통 보다 큰 글씨체를 쓰는 것이 관례이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독자가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본문 기사를 찾아 읽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티저의 목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정기구독자들로 하여금 신문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글쓴이가 이러한 목적을 염두해 둔다면, 오류나 거짓에 대하여 더욱 더 부주의해질 위험성이 있다. 특히나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문의 특별판과 같이 평소보다 더 많은 독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 개인의 명예가 입는 손실은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 본 사건과 같이, 오류가 본문 기사와는 별개의 티저 헤드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 본 법정은 티저와 본문 기사를 하나의 통일체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본 법정의 과반수가 원고의 피고의 의도된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보통 약식판결을 내릴 때의 기준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본 법정은 1심과 2심의 실수를 그대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를 더욱 심화시켰다. 물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증명하려면 의도된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법정이 판결해 왔듯 비록 약식판결 신청을 하지 않은 쪽에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증거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이라고 하는 기준은 원고의 입증 책임을 조금 더 하는 것이지 보통의 약식판결 기준인 원고의 ‘50% 이상의 확률이 있음을 증명하

는' 입증 책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III.

마지막으로, 본 법정이 인정했듯이, '의심의 여지없이 부주의' 하며,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에 손해를 끼친' 저널리즘을 포용함으로써 본 법정의 과반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데 위협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섰다.

일례로 Milo는 그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였으며, 왜 '체포되다'라는 단어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소당하다'와 '체포되다'에는 어떤 뉴스적인 가치의 차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그가 그러한 헤드라인을 작성했을 때 그가 적은 것이 진실이라는 것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거를 분석하면서 본 법정의 과반은 이상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했다. 한마디로 만약 진술서 작성 도중에 변호인과 상의 후 본인이 그저 의심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고 오류가 있는 단어가 진실된 단어와 동일한 뉴스적인 가치만 있다고 진술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본 법정의 과반은 Milo가 본인의 변호인과 상의하기 이전에 했던 대답이 진실이고 변호인과 상의한 후 했던 대답이 거짓일 확률을 무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Milo의 증언이 거짓일 확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있다. 첫째, 그는 증언을 거듭할수록 민사상의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는 것과 체포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둘째, 그는 최종 진술에서 'harboring no doubt'이라는 굉장히 비구어체적이며 법률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용어는 우리주의 관습법에 익숙한 변호인에게서 나왔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셋

째, 그는 그의 첫 번째 솔직한 진술이었던 그가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진술을 바꿔야 할 모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직장뿐 아니라 그의 신문사의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약식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하면서, 오늘 본 법정의 과반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쓴 편집장이나 기자가 그저 너무 바쁘고,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압박에 시달리고, 앵무새처럼 'harboring no doubt'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기만 하면 언론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을 만들어 냈다. 오늘 본 법정은 원고가 배심원에게 증거 제출조차 못하도록 판결을 하면서, 이미 매우 높은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가 넘어야 수인해야 하는 임계치를 더욱 더 높여버렸다. 이는 곧 부주의하며 무신경한 언론을 양산할 것이다.

과반의 법적 해석과 사실관계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본인은 반대 의견을 낸다.

■ 출처: 『Media Law Reporter』 Vol.40/
P.1461-1473

■ 번역: 우예슬(고려대학교 정책학 석사과정)

외국신문평의회 사례

[영국사례 1]

신문사의 실수로 익명을 요청한 기고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심각한 실수지만 신문사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신청인 : 익명의 여성

언론사 : Clevedon People

인용된 조항 : 보도윤리강령 제3조

불만내용

익명의 여성은 2001년 초, 'Clevedon People' 지에 실린 그녀의 기고문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신문사의 실수로 그녀의 신분이 노출되어 보도윤리강령 제3조(사생활) 위반을 근거로 PCC에 도움을 요청했다. PCC는 보도윤리강령 제14조(기밀 정보원)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또한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제3조 위반에 해당하나 신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며, 강령 제14조를 위반하는 사안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신문사에 이메일로 지역 목재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그녀는 기고문을 신문사에 전달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이름과 주소를 기입했으나, 이름과 연락 정보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고문에 삽입된 사진에서 그녀의 발언을 인용하는 설명을 달면서 그녀의 이름은 신문사의 실수로 명시되었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의 시골 사회에서 해당글의 내용에 관한 문제는 민감하며 신문사가 그녀를 기고문의 저자로 명시함에 따라 그녀와 그녀의 가족 등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신문사는 그녀의 이름이 명시된 것은 제작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즉각적인 화답으로 사과를 전했다. 또한 공식적으로 PCC의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요청에 따라 기고문을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인쇄하지 않는 것에 확실히 동의했다.

피해 여성은 그녀가 불만을 제기했을 당시 신문사의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과 그녀의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이 직업윤리 정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PCC에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신문사가 즉각적으로 사과를 전한 결정에 불쾌함을 표했다.

결정

충분한 교정 조치가 취해졌다.

평결

출판은 목적으로 기고했고 공공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작성자가 자신이 기고자임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신문사도 인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작성자의 이름이 명시된 것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것이었고, 이것이 곤경을 야기했음도 분명하다. PCC의 시각에서 볼 때, 기고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문사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녀의 이름이 출판물에 기재되었다는 것은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강령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사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기록 보관소에서 삭제했고, 재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고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PCC는 제3조

위반은 유감스럽지만 신문사가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강령 위반에 대한 사건의 본질을 볼 때, PCC는 신문사가 강령 제14조의 기밀 정보원 보호에 실패했는지도 고려하고자 했다. PCC는 과거 출판물과 관련하여 유사한 고충을 전담한 적이 있는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이름을 기고문에 명시한 사례였다[익명의 남성 vs 옥스퍼드메일, 2010].

PCC는 두 사례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 사례에서 기고자는 기밀 정보원 혹은 ‘내부 고발자’로 분류될 수 없다. 그녀는 단순히 공공에 공개되는데 있어 그녀의 익명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가깝다. 그녀의 기고문 속 견해 그 자체에는 개인적이거나 기밀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또한 이 사례에서 당사자들 간의 기밀 유지 동의 혹은 그와 유사한 암시적인 관계 형성이 전혀 없었다. (언급한 이전의 사례에는 있었다.) PCC는 제14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

[영국사례 2]

사건과 무관한 범죄자 아들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보도해서는 안된다.

신청인 : 익명의 여성

언론사 : Daily Mirror

인용된 조항 : 보도윤리강령 제6조, 제9조

불만내용

익명의 여성은 PCC에 2011년 1월 4일자 Daily Mirror의 “증오하는 파트너들” 제목의 기사가 아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보도윤리강령 제6조(아들)와 제9조(범죄 보도)를 위반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은 인용되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최근 Stephen Lawrence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Gary Dobson과 David

Norris에 대한 기사이다. 기사에서는 신청인을 Gary Dobson의 전처로 묘사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실명과 나이를 게재했다.

신청인은 이러한 정보가 안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아들은 이 기사가 보도된 후 학교에서 불량배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재판에 관계되어 있지 않았고 그녀는 아들의 인적사항을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다.

신문사는 그녀가 그녀의 아들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Facebook 프로필 사진에 노출시켰으며 친척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온라인 기사에서 삭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들을 다시는 관계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으며 아들을 명시하여 보도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사적인 편지를 신청인에게 보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9조(범죄 보도)에 따르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제기된 사람의 친인척 혹은 친구는 그들이 사건에 실제로 연루되지 않은 한, 그들의 동의 없이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평의회의 시각에서 볼 때, 신청인의 아들은 이 경우에 사건에 “실제로 연루된” 것처럼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무고하며, 신문사는 그가 과거에 그의 아버지의 범죄나 법적인 절차에 공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어떠한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의 유죄선고를 다룬 기사에서 그의 이름과 나이를 밝힌 것은 강령 제9조에 명백히 반한다.

제6조(아들)에서는 다음을 명시한다. “아이들은 불필요한 간섭이나 사생활의 침범 없이 학교에서 그들의 시간을 완수할 자유를 가진다” 평의회는 신청인

의 아들을 범죄와 관련하여 공적으로 연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호주사례]

공인의 사생활 보도가 지닌 공공의 이익은 공인의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사건번호 : 1531

신청인 : Mark Latham

언론사 : The Sunday Telegraph

개요

호주언론평의회는 The Sunday Telegraph에 2011년 12월 11일과 18일 보도된 기사에 대한 Mark Latham의 불만을 접수했다. 기사는 NSW 교육센터가 지역 수영장에서 주관하는 수영 강습에서의 그의 행동에 대한 것이다. 그의 어린 자녀들은 해당 강습에 참석했다.

첫 번째 기사는 그가 교육센터에서 수영 강사를 위협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는데, 강사는 유명한 호주 운동선수의 어머니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강사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내가 보기에 저들은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그녀가 이에 응답하자 “많은 부모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사는 “겉으로 보기에도 당황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수영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다’는 표현으로 공중수영장을 명시했고 Mr.Latham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명시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기자가 3일 후 수영장에서 Mr. Latham에게 접근했지만 그는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함구했

다고 전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이전 기사의 어떤 부분들을 반복하며 Mr.Latham이 첫 번째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그의 아이들을 수업에서 하차시켰다고 덧붙였다.

Mr.Latham은 기자가 다른 수영 강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기사에서 밝혔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익의 충돌로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가 말하기를, 적어도 그의 아이들 중 한 명은 강습을 받는 동안에 리포터 어머니의 지도를 받았을 것이며 이는 그들과 그녀의 관계에 대해 아이들이 말한 것이라 덧붙였다.

신문은 그녀가 그들 중 어떤 아이도 가르치지 않았으며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이익의 충돌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녀는 세 명의 강사로 이루어진 강습 코스의 강사이며 그 사건 당일에는 Mr.Latham이 말한 그 강사의 감독 하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사는 그녀가 그 강습팀의 일원으로 자주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Mr.Latham은 또한 기사가 특히 그의 아이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속해있다고 밝힘으로써 공공의 관심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그의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사는 이에 대해 그가 과거 제1야당 대표로 국회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정치와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미디어에 자주 출현했기 때문에 공인에 속한다고 대응했다. 기사는 “공인이 약자를 괴롭히고 협박하며 공공기금으로 조성된 수영장에서 큰 소리로 대치”하는 것과 유명한 아들로 인해 잘 알려진 강사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r.Latham은 이것이 큰 소리로 대치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부정했다.

결정 이유

평의회는 기자와 감독관(문제의 수영강사)의 관계는 그녀의 기사에서 밝혔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은 그녀의 어머니가 프로그램의 아주 작은 강사팀의 한명이라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녀

의 어머니가 Mr.Latham의 아이들을 가르쳤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야기의 정보원과도 무관하다. 잘 알려진 원칙에 따라 판단할 때, 갈등이 기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으면, 실제로 그러한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익의 충돌은 존재한다고 평의회는 강조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한 이러한 측면은 인용된다.

평의회는 Mr.Latham이 국회의원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론에서 논평자로서 높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공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들은 그의 공적인 활동 혹은 관점에 관계된 것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Mr.Latham이 제기한 불만은 그의 가족의 사생활 침해, 특히 그 자신이 아닌 그의 어린 아이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자신의 사생활이 적합한 정당화 과정 없이 침해되었는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평의회는 Mr.Latham이 수영장에서 보인 행동에 대한 기사는 보도로 인한 아이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공공의 이익에 충분히 중요하지는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특히 그들이 이름 있는 장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첫 번째 기사에 적용된다. 두 기사는 모두 그들의 아버지가 강사 중 한 명에게 프로그램을 비판했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으며, 두 번째 기사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강습 프로그램으로부터 아이들을 하차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실들은 거대한 발행부수의 The Sunday Telegraph라는 신문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러한 신문사의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신문사가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제기된 불만의 이러한 측면은 아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비이성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인용된다.

[뉴질랜드사례]

‘칼럼’은 일반 기사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받지만 그 표현이 매우 극단적이어서 견해라고 수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2260

신청인 : Diane White

언론사 : The Weekend Herald

도입

1. 뉴질랜드 언론 평의회는 2012년 2월 11일 The Weekend Herald의 Paul Holmes가 작성한 칼럼 “완전 쓰레기에 불과한 Waitangi Day”에 대한 일곱 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몇몇의 불만은 다른 원칙에 대한 것이지만, 핵심적인 불만은 평의회 제1원칙(정확성, 공정성과 균형)과 제6원칙(차별과 다양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2. 불만은 인용된다.

칼럼

3. 불만이 제기된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 칼럼의 몇 개 문단을 통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관련이 있는 문단은 다음과 같다:

Waitangi Day에 사회의 온갖 혜택을 받는 추악한 괴짜들의 집단은 전혀 문제없이 선출된 총리에 대한 중요, 무례함, 폭력을 표출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뉴질랜드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더없이 행복하게 유지하며, 그들의 세상에서는 아무도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조약뿐이라 생각한다.

나는 Waitangi Day에 반대한다. Waitangi Day 아침에 침대에 누우면서부터 나는 그저녁 늦은 뉴스에서 무시무시한 마오리족을 보게 될 것임을 안다. 뉴스에서 보이는 그들은 욕설을 하고 잘난체를 하며 스

스로의 세계에 빠져서 신경질적인 마오리 정치를 하는 비이성적인 모습이다. 이것들로 인해 우리는 과거에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눈앞에 닥쳤음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정교화되지 않은 Waitangi 조약의 원칙에 대해 말하고 이를 어떤 식이든 적용시켜야 한다. 명백하게, 이것은 미래에 분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긴 논의가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마오리 자치의 손에 수백만을 헌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신만이 마오리 자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안다.

Waitangi Day는 쓰레기 같은 날이다. 이것은 거짓의 날이다. 이것은 꼬짜 마오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날이다. 실질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표현되는 날이다. 아이들의 통계는 신경쓰지 말고 국가의 무단결석생의 통계도 신경쓰지 말며 마오리가 그들의 아이들을 교육하여 자신들의 아기들을 확대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것에 완전히 실패한 것을 신경쓰지 말라. 아니다, 이것은 모두 파케하¹⁾의 잘못이다. 이것은 휘트니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것이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것이다.

아니다. 만약 마오리가 그들 스스로 Waitangi Day를 원한다면,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더 큰 것을 위해 그들의 필요 이상으로 카이 마오나를 더 공격해라. 그리고 그들 스스로 어리석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라. 탐욕스러운 파케하에 의해 그들에게 쌓인 부정에 대해 말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위해 파케하를 속여 정신없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라.

신청인

4. 신청인들은 다양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Paul Homes의 발언 중 인종차별적이고 편견

이 심한 내용은 불쾌하다. 그것은 견해가 아니라 편파적인 발언이다. 다양한 관점에 해당하는 반대 의견이 아니라 편파적인 발언을 통해 선동하는 것이다.

(b) 기사는 오늘날 뉴질랜드라는 이름 하에 마오리족이 죽음과 부상을 포함한 희생을 감수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마오리족과 뉴질랜드 사회의 기반이 되는 조약을 하찮고 우습게 여긴다.

(c) Holmes는 마오리족을 겨냥하여 강한 분노를 일으키는 직설적인 발언을 했다. 마오리족을 파케하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도를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d) 이런 종류의 저널리즘은 모욕적이고 불쾌하다.

(e) 편집자는 이렇게 무시하는 투의 “난리”를 지면에 표현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우리의 ‘조약’을 경시했다.

(f) 불쾌하고 역겨우며 부정확한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양산한다.

(g) 칼럼은 적절하지도 않고 공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방법으로 인종과 소수 민족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킨다. 또한 인종과 소수 민족에 대해 쓸데없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언론사 주장

5. The Weekend Herald의 편집장인 David Hastings는 일부 사람들이 칼럼을 불쾌히 여기는 것은 인정하지만 칼럼은 평의회의 원칙이나 법 중 어떠한 것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불만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며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 칼럼은 Waitangi Day와 뉴질랜드 사회에서 이 날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쟁의 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논쟁은 지난 주에 이미 시작했으며 계열사인 The New Zealand Herald에서 다른 칼럼니스트들이 관련 사실과 투고를 게재했다.

(b) 칼럼니스트는 Waitangi Day에 시위자들이 파케하에게 사회적인 문제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 등을

1)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백인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

포함한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동과 태도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날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c) 한 신청인은 칼럼이 활동가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마오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

(d) 시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문장에 대해서는 문맥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문맥을 고려할 때 칼럼은 마오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칼럼의 도입부에 표현한 바와 같이 “증오를 유발하는 괴짜들”인 시위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e) 칼럼니스트는 Waitangi Day 행사를 방해한 마오리족 활동가들에 매우 비판적이다. 이는 그들의 인종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혐오스럽고 무례하며 폭력적이고 그들의 정치는 비이성적이고 신경병적이기 때문이다.

6. 평의회의 원칙을 적용할 때, The Weekend Herald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a) 고충을 처리하는 평의회는 공공 관심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1의 고려대상으로 여긴다.

(b) 평의회의 원칙하에, 인종과 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의견 표명은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적절한 것이라면 허용가능하다.

(c) 2001년 세계언론자유 날 언론평의회 前회장의 연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공정함에 대한 매우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소중한 규약에 대해 완화되어 표현된 공격에서부터 매우 충격적인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의 출판물을 접하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것은 불쾌한 표현, 심지어 왜곡과 극단적인 시각까지도 표현에는 필수적인 열린 사회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견해를 교환하는 것의 일부이다.

(d) 평의회의 이전의 몇몇 결정은 이에 참고될 수 있으나 이를 검토한 결과, 평의회의 시각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변용하지 않는다.

결정 이유

7. 만약 The Weekend Herald의 입장이 수용된다면, 해당 칼럼의 견해는 신청인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평의회의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는 견해에 매우 관대하지만 제한점을 갖는다.

8. 적합한 원칙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기존의 결정들을 참고한 평의회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견해를 밝히는 칼럼은 균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평의회에는 하나의 전례가 있는데, 견해를 밝히는 칼럼이 공정하고 균형있는가에 대한 장기간의 논쟁을 보도하는 신문사의 의무에 대한 것이다.

(b) 견해가 바탕이 되는 실질적인 사실은 정확해야 한다.

(c) 견해를 밝힌 글은 이것이 말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비인간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강조를 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d) 평의회는 극단적이고 화를 돋우고 불쾌하며 심지어 모욕적인 견해의 표현이 아니라면 불만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견해가 그 본질이나 말투에 있어 매우 극단적이어서 견해라고 수용될 수 없을만할 때 불만은 인용된다. 공공에 위협을 주는 극단적인 환경을 야기하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쾌감을 준다면 평의회가 그러한 환경에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9. 이 사안에는 균형에 대한 쟁점은 없다. 균형은 지속적인 논쟁이 존재하는 어떤 환경에서는 요구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Weekend Herald지가 몇 개의 칼럼과 사설에 Waitangi Day 문제에 대해 논한 것은 공정하고 균형있는 것이다.

10. 평의회는 불만을 접수하지만 이 기사 자체는 불만을 접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칼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편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

으로 불만을 접수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 중 한 명은 이 문제를 국가인권평의회에 회부하기도 했는데 성공적이지 않았다.

11. 평의회의 시각에서 볼 때 이 고충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a) 표현된 견해 중 어떤 것이라도 부정확하거나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b) 견해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는가?

(c) 만약 견해가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은 것이라면, 이것은 마오리에 대한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친 공격 때문인가?

12. 평의회는 「The Weekend Herald의 주장 - 칼럼이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마오리족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Mr. Holmes는 시위자들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말했고 칼럼에서 그는 이렇게 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평범한 칼럼에서 그는 정도를 넘었다. 아이들과 무단결석 통계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진실된 것들을 제외한”이라고 그가 말한 것과 “괴짜 마오리족의 스스로를 부정하는 날”이라고 말하며 “마오리족이 그들의 아이들을 교육시켜 그들이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멈추게 하는데 희망 없이 실패한 것”이라고 한 것은 시위자들보다는 확실히 마오리족 전체를 지칭한 것이다.

13. 마오리족에 대한 언급은 그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더 큰 것을 위해 그들의 필요 이상으로 카이 마오나를 더 공격해라. 그리고 그들 스스로 어리석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라. 탐욕스러운 파케하에 의해 그들에게 쌓인 부정에 대해 말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위해 파케하를 속여 정신없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라”라고 말한 것을 통해 일반적인 논의에 가깝다 볼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시위자들의 Waitangi Day에 대한 행동이라기보다 마오리족 그 자신들의 Waitangi Day에 대한 갈망을 일컫는 것에 더 가깝다. “보통의 신경병적인 마오리 정치”라는 표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마오리 자치에 몇 백만을 참여시킨다는 언급도 마오리족 전체에 대한 언급에 가깝다.

14. 발언을 맥락 속에서 고려할 때, 합리적인 독자는 Waitangi에 대한 시위자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종족 그 자체로 마오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오리족이 그들의 아이들을 교육시켜 그들이 아이들을 때리지 않도록 하는데 “희망 없는 실패”를 한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종족으로서 마오리에 혐의를 씌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15. 견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평의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극단적인 것이라 판단하며 본 칼럼을 종족으로서의 마오리에 대한 쓸데없는 공격이라 여긴다.

16. 이것은 종족으로서 마오리에 대한 주장이 부정확하고 마오리에 대한 견해들이 극단적이며 지나친 불쾌감을 조성할 정도이기에 불만은 인용된다.

■ 번역: 이슬기(University of Toronto, east asian studies, 석사과정)

언론법제관련문헌

- 강재원 · 김선자 (2012). 인터넷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의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2호, 143-166.
- 강철수 · 김덕모 (2012. 6. 8). 선거방송과 지역케이블방송의 지위. 호남언론학회, 광주전남언론학회주최 '선거와 지역케이블방송' 공동세미나발제문.
- 권상희 (2012. 6. 1). 소셜미디어의 진화와 미디어 생태환경: 전통미디어와의 융합과 경쟁.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세미나 발제문.
- 김경모 (2012).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언론정보연구』, 제49권 제1호, 7-37.
- 김광우 · 백선기 (2012). 제주도지사 선거TV뉴스의 의제형성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 『한국방송학보』, 제26권 제2호, 7-45.
- 김규찬 (2012. 4. 14). 정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특성과 성과: 1974-2011 문화예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언론과 사회〉 분과 월례 세미나' 발제문.
- 김균 · 이정훈 · 박영흠 (2012. 5. 18). '조중동' 담론의 형성과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 언론학: 세대를 넘어' 발제문.
- 김영호 (2012. 6. 8).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지역케이블방송의 역할. 호남언론학회, 광주전남언론학회주최 '선거와 지역케이블방송' 공동세미나 발제문.
- 김위근 (2012. 5. 4).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 포털 사이트의 이용과 전망.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Portal meets mobile and TV' 세미나 발제문.
- 김지만 (2012. 3. 29).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국제사법적 쟁점. 한국국제사법학회주최 '제105회 정기연구회' 발제문.
- 남승용 (2012. 5. 8).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관리가 전통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주최 '망중립성 정책과 전통 미디어산업' 세미나 발제문.
- 마동훈 (2012. 6. 1). SNS 정치 발언의 '진실 검증 (fact-checking)': 평가와 함의.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세미나 발제문.
- 문일환 (2012).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동아법학』, 제55호, 343-371.
- 문재완 (2012. 6. 1).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세미나 발제문.
- 박상호 (2012. 5. 4). TV 환경에서 포털의 콘텐츠

- 및 이용자 전략.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Portal meets mobile and TV' 세미나 발제문.
- 박용상 (201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5-58.
 - 박진우 (2012). 뉴스 생산의 유연화와 저널리스트노동. 『언론정보연구』, 제49권 제1호, 38-72.
 - 박천일 (2012. 5. 8). 망중립성 정책이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주최 '망중립성 정책과 전통 미디어산업' 세미나 발제문.
 - 반현 (2012). 경인지역 일간 신문의 지역성과 공공저널리즘 실천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제16권 제1호, 33-71.
 - 방은주 · 김성태 (2012. 5. 18). 국내 주요신문의 소셜미디어 정보원 뉴스보도분석.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 언론학: 세대를 넘어' 발제문.
 - 설진아 (2012). 이집트 민주화 혁명에서 SNS와 소셜저널리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7-30.
 - 손영준 · 이완수 (2012. 5. 18). 미디어 이용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2011년 서울·부산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 언론학: 세대를 넘어' 발제문.
 - 신인영 (2012). 17대 대선기간동안의 BBK스캔들 보도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1호, 68-97.
 - 심우민 (2012. 6. 16). SNS 규제와 입법정책. 한국법사회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SNS 시대의 소통권리와 규제권력' 공동학술대회 발제문.
 - 양재규 (2012. 4). 법을 알고 기사쓰기 81 - 특정후보자 부각 보도는 선거법 위반. 『신문과 방송』, 통권 496호, 88-91.
 - 양재규 (2012. 5). 법을 알고 기사쓰기 82 -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취재의 자유. 『신문과 방송』, 통권 497호, 89-92.
 - 양재규 (2012. 6). 법을 알고 기사쓰기 83 - 공인이라도 사생활 공개할 때 신중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98호, 91-94.
 - 윤석민 (2012. 5. 18). 과잉 정치화된 미디어 정책시스템의 해법 찾기: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 언론학: 세대를 넘어' 발제문.
 - 이근옥 (2012. 5. 18). 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언론소송의 유형과 면책범리의 특성.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 언론학: 세대를 넘어' 발제문.
 - 이기형 · 이영주 · 황경아 · 채지연 · 천혜영 · 권숙영 (2012). "나꼼수현상"이 그려내는 문화정치의 명암.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74-105.
 - 이부하 (2012). 공인(公人)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43-77.

- 이소영 (2012. 6. 1). 4·11총선과 SNS 선거캠페인.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세미나 발제문.
- 이수영 · 현대원 · 좌영녀 (2012). UCC 이용 행태에 따른 차별적 미디어 경험. 『한국방송학보』, 제26권 제2호, 122-166.
- 이수현 (201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정보제공자·편집책임자·언론사(법인)의 형사책임.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235-255.
- 이영주 (2012. 6. 14). 지상파방송의 N스크린 서비스의 법제도적 쟁점과 정책방안. 한국방송학회주최 ‘지상파방송의 N스크린 서비스와 지역방송의 지역성’ 세미나 발제문.
- 이완수 (2012. 5. 11). 연합뉴스의 시장모델-국가 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과 한계. 연합뉴스,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서 연합뉴스의 위상과 경쟁력 확보 방안’ 공동세미나 발제문.
- 이준웅 (2012. 5. 18). 19대 총선과 매체이용의 효과.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 언론학: 세대를 넘어’ 발제문.
- 이진로 (2012).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랩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제16권 제1호, 195-221.
- 이진로 (2012. 3. 9). 디지털리즘 시대에 있어서 선거방송보도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디지털리즘시대의 정책과 보도’ 세미나 발제문.
- 이진로 (2012. 4. 6). 선거와 방송, 그리고 SNS: 그 역할과 관계 정립. 한국방송학회주최 ‘총선 방송보도의 쟁점과 전망’ 세미나 발제문.
- 이현우 (2012. 5. 18). 미디어 정책결정 과정의 네트워크 구조분석: 미디어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 언론학: 세대를 넘어’ 발제문.
- 이화진 (2012. 5. 25). 지상파 3사의 4·11 총선 선거 방송, 평가와 과제. 여의도클럽주최 ‘2012 하계 여의도클럽 정책세미나’ 발제문.
- 임영호 (2012). 신문 매체의 지리적 특성. 『언론학연구』, 제16권 제1호, 287-314.
- 임종섭 (2012. 5. 18). 소셜 미디어의 개념 고찰: 연구자, 언론, 이용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 언론학: 세대를 넘어’ 발제문.
- 전영 (2012). 선거관련 방송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 27-51.
- 정두남 (2012. 6. 7). 스마트 TV의 현황과 전망. 강원언론학회주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지역방송 대응 및 과제’ 봄철 세미나 발제문.
- 정일권 (2012. 6. 1). SNS를 통한 정치참여.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세미나 발제문.

- 정정주 (2012. 6. 19). 소셜미디어와 ‘아랍의 봄’에 관한 보도 분석 연구. 대구경북언론학회 주최 ‘학술세미나’ 발제문.
- 조영신 (2012. 5. 25). 스마트 미디어시대의 지상파 방송 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여의도클럽 주최 ‘2012 하계 여의도클럽 정책세미나’ 발제문.
- 조화순 (2012. 6. 1). SNS와 정당정치 변화. 한국언론학회 주최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세미나 발제문.
- 주정민 (2012. 6. 14). 지상파방송의 N스크린 서비스와 지역방송 파급효과. 한국방송학회 주최 ‘지상파방송의 N스크린 서비스와 지역방송의 지역성’ 세미나 발제문.
- 주철환 (2012. 5. 25). 종편의 미래.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최병환 (2012. 5. 25). N스크린 서비스의 10가지 키워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최수연 (2012. 5. 18). 선거기간 팟캐스트, 후보자 트위터, 신문, 방송뉴스에서 다뤄지는 선거 관련의제의 매체간 의제설정 연구 :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 언론학 : 세대를 넘어’ 발제문.
- 최영묵 (2012. 5. 8). 망중립성 정책과 미디어 공공성. 한국방송학회 주최 ‘망중립성 정책과 전통 미디어산업’ 세미나 발제문.
- 최영재 (2012. 4. 6). 4·11 총선 방송보도 들여다보기 : 방송뉴스와 유권자의 거리. 한국방송학회 주최 ‘총선 방송보도의 쟁점과 전망’ 세미나 발제문.
- 최영재 (2012. 5. 11). 컨버전스 환경과 연합뉴스의 N-Screen 콘텐츠 제작 전략. 연합뉴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서 연합뉴스의 위상과 경쟁력 확보 방안’ 공동세미나 발제문.
- 허윤철 (2012. 6. 1). 한국의 뷰어태리어트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나타난 서울 시장 보궐선거 토론회. 한국언론학회 주최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세미나 발제문.
- 홍대식 · 김성유 (201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 개념의 재정립. 『방송통신연구』, 제 78호, 9-44.
- 황용석 (2012). 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106-129.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 - 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 - 3000, 3010, 3100, 3110 팩스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팩스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 763 - 0020~1 팩스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 676 - 0360~1 팩스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 525 - 0778~9 팩스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 211 - 9022, 9027 팩스 031) 211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 255 - 2878~9 팩스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번지)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 286 - 8081, 8083 팩스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 288 - 0010, 0981 팩스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 263 - 1780, 1787 팩스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 5길 6(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 722 - 3328, 3352 팩스 064) 726 - 3201